



법령해석 회신문 사례집

FINANCIAL SERVICES COMMISSION

2020년도



금융위원회

목 차

1. 공통	1
● 금융정책 일반	3
● 금융소비자	5
● 자금세탁방지 관련	92
● 기타(공동소관)	14
2. 은행	5
3. 보험	9
4. 중소기업	9
● 여신전문금융업	79
● 상호저축은행업	13
5. 자본시장	19
6. 금융혁신	14
● 전자금융	15
● 신용정보	187
7. 기타(“금융규제민원포털” 미등재)	207

1

공통

금융정책 일반

법령해석 회신문(19001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금융지주회사가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 적용되는 주식의 종류에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제44조 제1항 본문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등이 아닌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5 이내에서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p> <p>○ 문언상 '발행주식총수'는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의결권 없는 주식을 포함하는 개념이라고 보여집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14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라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계약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인 보험회사가 다른 자회사인 은행의 담보물권 확인을 위해 보험계약 정보(보험료 수납정보(미입금, 연체), 계약 실효 여부 등)를 제공하는 것은 은행이 고객과 질권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담보물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211)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외부감사법 제8조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 업무가 「금융사 지배구조법」(이하 ‘지배구조법’)에서 정한 준법감시인의 겸직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는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지배구조법에서는 준법감시인에 대하여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및 그 부수업무, 경영업무 등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습니다.(지배구조법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input type="checkbox"/> 준법감시인의 겸직 제한은 준법감시인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총무·인사·회계·법무·소비자보호 등 Back office 업무 일반은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실질적으로 회계가 아닌 재무 및 기획 업무 등을 수행하게 될 경우 이는 금융회사의 영업 및 자산운용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겸직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 집 배포’ 76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① 및 77번 위험관리책임자의 겸직② 참조)

76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① [법 제28조]

◇ 위험관리책임자가 해당 금융회사내의 겸직금지업무로 명시되지 않은 인사, 총무, 법무 등 업무 수행 가능여부

➔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않는 업무는 겸직할 수 있습니다.

□ 법 제28조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금지 업무(자산운용,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업무·그 부수업무 등)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인사, 총무, 법무 등의 업무는 법 상 겸직이 제한되는 업무로 보기 어려운 만큼, 다른 법령상 제한이 없다면 겸직이 가능합니다.

○ 다만, 준법감시인과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을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관련조문 >

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1.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3. 해당 금융회사의 겸영(兼營)업무
4. 금융지주회사의 경우에는 자회사등의 업무(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책임자가 그 소속 자회사등의 위험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5. 그 밖에 이해가 상충할 우려가 있거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업무에 전념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영 제24조(겸직 금지 등) ① 법 제29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말한다.

② 법 제29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말한다. 다만, 제20조제2항에 따른 금융회사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겸직할 수 있다.

1. 위험관리책임자: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준법감시인의 내부통제 관련 업무
2. 준법감시인: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위험관리책임자의 위험 점검·관리 업무

77 위험관리책임자 겸직② [법 제29조]

◇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겸직을 금지하고 있는 본질적 업무에 심사업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라고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수행이 가능합니다.

□ 본질적 업무 등이라 하더라도 위험관리책임자의 고유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위험관리책임자가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지배구조법 §28①)

○ 예를 들어 위험관리책임자가 여신심사나 자산운용 등과 관련한 심사위원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거나 의견을 개진하는 행위 등은 가능할 것입니다.

□ 다만, 위험관리책임자가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부서를 직접 관장하거나 본질적 업무와 관련한 최종적인 집행권한을 갖는 것은 위험관리 업무의 범위를 넘는 것으로 허용되기 어렵습니다.

□ 상세한 업무허용 범위는 별첨한 예시 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관련조문 >

제28조(위험관리책임자의 임면 등) ① 금융회사(자산규모 및 영위하는 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는 제외한다)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법 제29조(겸직 금지 등)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를 담당해서는 아니 된다.

2.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해당 금융회사가 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말한다) 및 그 부수업무

법령해석 회신문(190241)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보고 대상이 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비금융회사 상근임원을 겸직하는 것은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지배구조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상근임원이 다른 영리법인의 상근 임직원을 겸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지배구조법 제10조 제2항 내지 제4항에 따라 예외적으로 겸직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11조에 따라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됩니다.</p> <p>○ 그리고, 지배구조법 제11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 제9항에 따라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는 겸직보고 대상이 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80058 참조)</p>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는 금융회사 상근임원이 아닌 점, 금융회사의 비상임이사 또는 비상근감사가 겸직하는 회사가 비금융회사인 점을 고려하면 지배구조법에 따른 겸직 승인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02)

질의 요지	<p>○ “금융회사 여신심사 선진화방안(17.11.27) 별첨 p13 부동산임대업 여신심사 강화”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1장제1절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에서 임대소득의 명확한 정의*는 무엇인가요?</p> <p>* (예시) 월차임 외 월관리비 포함 여부 및 부가세 포함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임대소득’이란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 세부기준’ 제4조에 규정된 ‘세전 임대소득’을 의미하며,</p> <p>* 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세전 임대소득’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임대업 RTI 산출과 관련하여 “저축은행 표준 대출규정 [별표10]은 임대소득을 ‘세전 임대소득’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p> <p>* 제4조(임대소득 산정원칙) ① 임대소득은 원칙적으로 임대사업 대상인 임대물건에서 발생하는 세전 소득으로 산정한다. 다만, 사업장 단위로 RTI를 산출하는 경우에는 동일 개인사업자등록번호로 영위하는 사업장 기준으로 임대소득을 합산할 수 있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세전 임대소득’은 대출 취급시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등)에 기록된 임대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4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 관련하여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요구되는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각 금융회사에서 자율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위험관리책임자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며, 해당 금융회사가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지배구조법 제28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자산의 운용이나 업무의 수행, 그 밖의 각종 거래에서 발생하는 위험을 점검하고 관리하는 위험관리책임자를 1명 이상 두어야 합니다.(일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 제외)</p> <p>○ 이와 관련,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에서는 위험관리책임자의 자격요건으로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출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구체적으로는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최근 5년간 금융당국 등으로부터 문책경고 또는 감봉요구 이상에 해당하는 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p> <p>- 또한,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①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른 검사 대상 기관에서 10년 이상 근무, ②금융 관련 분야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 소지자로서 연구기관 또는 대학에서 위험관리와 관련하여 연구원 또는 조교수 이상의 직에 5년 이상 종사, ③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예금보험공사 등에서 위험관리 관련 업무에 7년 이상 종사해야 합니다.(①~③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됨)</p> <p>○ 한편,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사안에서 위험관리책임자는 위험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실무경험을 갖춘 사람이어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28조 제3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자격요건에 적합하다고 인정됩니다.</p> <p>○ 한편, 지배구조법 제30조 제2항, 시행령 제25조, 감독규정 제14조, 감독규정 시행세칙 제6조에 따라 금융회사는 위험관리책임자 선임일로부터 7영업일 내에 법에서 정한 위험관리책임자 자격요건에 적합하다는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는 것을 반영한 선임 심사표를 작성하고, 이를 금융당국에 보고하여야 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69)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여신 사후관리 업무(채권관리, 채권추심 등)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9조에서 정한 준법감사인 겸직 금지 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이 여신 사후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지배구조법 제29조에 따라 겸직이 제한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서는 직무충실성 보장 및 업무상 이해상충 등을 방지하기 위해 준법감시인이 자산 운용에 관한 업무, 해당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 부수업무 및 겸영업무 등을 겸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지배구조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24조)</p> <p>○ 준법감시인이 금융회사의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 또는 여신 사후관리 업무 등 여신 관리와 관련한 전반적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준법감시인의 업무범위를 초과하기 때문에 허용되기 어렵습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90065 참조)</p>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여신 사후관리(채권관리, 채권추심 등) 업무는 여신심사를 통해 금융회사가 보유하게 된 채권의 사후관리 업무로서 본질적 업무인 여신심사와 밀접하게 연계된 업무인 만큼 이해상충 여지가 없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겸직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81)

질의 요지	<p>□ 금융회사 준법감시인으로 선임된 직원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하여 회사 방침에 따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로 변경된 경우 준법감시인의 직위에서 물러나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25조제2항단서*에 해당하는 경우, 직원을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조제5항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또는 단시간근로자를 준법감시인으로 선임할 수 없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자산규모, 영위하는 금융업무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또는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p> <p>□ 한편, 직원 중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로 변경한 후, 준법감시인으로서 임기를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배구조법에서 따로 정하고 있지 않으며,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p> <p>○ 다만, 이 경우에도 회사에서 준법감시인으로서의 임기를 보장한다고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의 직무 중요도 등을 고려할 때 준법감시인은 상근직원이어야 합니다.</p> <p>※ 참고 : 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해석집 배포’ 73번 위험관리책임자 임면③ 및 81번 준법감시인 등 자격</p>
이유	<p>□ 지배구조법 제25조 제4항에서는 준법감시인의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임기를 2년 이상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이에 따라, 금융회사 직원 중에서 선임된 준법감시인이 임기 중 회사 내규에서 정한 임금피크제 적용대상이 되었다 하더라도 준법감시인으로서의 2년 이상 임기를 보장하여야 합니다.(법령해석 회신문 170213, 180263)</p> <p>○ 그러나, 임금피크제와 달리 정년에 도달한 경우, 계속 근무 가능여부는 회사의 방침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으로 계속 근무 기간을 보장하도록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를 정년 도달 후 임기 보장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확대해석 하기는 어렵습니다.</p> <p>□ 따라서, 직원 중 준법감시인이 정년에 도달한 경우, 기간제근로자 변경 및 임기보장여부는 회사에서 자체적으로 결정할 사항이며, 이 경우 준법감시인은 직무 중요도를 고려, 상근직원으로 하여야 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86)

질의 요지	<p>□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 제31조 대주주 변경승인 관련하여 대주주의 친인척*이 금융회사 주식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로서 아래의 사항에 대해 질의</p> <p style="margin-left: 20px;">*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1호의 특수관계인(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등)에 해당</p> <p>①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미만을 소유하고자 하는 경우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여부</p> <p>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자기주식이 포함되는지 여부</p> <p>③ 대주주의 친인척인 미성년자(내국인)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p> <p>④ 대주주의 친인척인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①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p> <p>-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시행령 제4조 각호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p> <div style="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시행령 제4조(주요주주의 범위) 법 제2조제6호나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혼자서 또는 다른 주주와의 합의·계약 등에 따라 대표이사 또는 이사의 과반수를 선임한 주주</p> <p>2.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주</p> <p>가. 금융회사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겸영금융투자업자는 제외하며 이하 "금융투자업자"라 한다)인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주주</p> <p>1)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경우: 임원(「상법」 제401조의2제1항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p> <p>2) 금융투자업자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집합투자업, 집합투자증권에 한정된 투자매매업·투자중개업 또는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 외의 다른 금융투자업을 영위하는 경우: 임원인 주주로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는 사람</p> </div>

	<p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나. 금융회사가 금융투자업자가 아닌 경우: 금융회사(금융지주회사인 경우 그 금융지주회사의 「금융지주회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자회사 및 손자회사를 포함한다)의 경영전략·조직변경 등 주요 의사결정이나 업무집행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주주</p> <p>-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p> <p>*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상법 제369조 제2항)</p> <p>③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p> <p>- 다만,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④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은 가능합니다.</p> <p>- 다만,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 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이유	<p>□ 지배구조법상 대주주란 ① 본인 및 특수관계인을 합하여 의결권 있는 주식 수가 가장 많은 경우의 그 본인(최대주주), ②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10% 이상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의 방법으로 금융회사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주주(주요주주)를 말합니다.(지배구조법 제2조 제6호)</p> <p>○ 한편,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대하여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및 4촌 이내의 인척 등 일정한 범위의 친인척 등과, 이러한 친인척 등과 합하여 30%이상 출자하거나 중요 경영사항에 대해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법인이나 단체 및 그 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이와 같은 특수관계인 규정은 본인과 일정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자의 경우 본인과 경제적 동일체로서 동일한 이해관계를 형성하게 되는 것을 감안한 것입니다.</p> <p>①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에서는 1%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최대주주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인 주주의 경우 대주주 변경심사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이 경우에도 시행령 제4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p>

- 이에 질의하신 바와 같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1% 미만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경우, 기존 보유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미만인 경우에는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하지 않으나,
 - 기존 주식과 새로이 취득하는 주식을 합하여 1% 이상이 된 경우에는, 과거 대주주 적격 심사를 받은 적이 없는 이상, 대주주 변경 승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② 상법 제369조 제2항에 따라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으므로,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26조 제4항 제5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③ 지배구조법은 미성년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적인 미성년자(내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미성년자가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지배구조법 제5조 제1항 제1호에서는 미성년자를 결격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만일,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 ④ 지배구조법은 외국인이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것 자체를 막고 있지는 않으므로 대주주의 친인적인 외국인도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외국인이 주식 취득으로 인해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될 경우에는 주식취득대상 금융회사가 금융지주회사여야 하는 등 지배구조법 시행령 별표1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만일, 주식 취득으로 대주주 변경 승인 대상이 되었으나, 대주주 변경 승인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지배구조법 제31조 제3항 내지 제4항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93)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상대 회사들과 유사하게 전무, 상무, 이사 등의 호칭을 사용할 경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이하 '지배구조법')에 따른 임원으로 봐야하는지 여부</p> <p>* 외부 고객사와의 원활한 의사소통 및 업무관계를 맺기 위해 마케팅 목적으로 해당 호칭과 업무 집행 권한의 부여와는 관계가 없으며, 또한 급여를 포함하여 인사상의 어떤 변화도 없음</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외국 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대표자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은 이 법에 따른 금융회사의 임원으로 보고 있습니다.</p> <p>○ 지배구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법 제3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 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등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국내지점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p> <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배구조법 제3조 제2항 및 시행령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업무집행책임자란 명예회장,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대표, 부대표,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 금융회사의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업무집행책임자로 간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p> <p>(금융위원회 '16.10.14 보도자료 '금융회사 지배구조법 관련 주요 문의사항에 대한 법령 해석집 배포' 업무집행책임자의 의미① 참조)</p>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사안에서 전무, 상무, 이사 등의 명칭은 지배구조법에서 업무를 집행하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고, 대외적으로 업무집행책임자로 인식될 수 있으므로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p> <p>○ 한편, 업무집행책임자로 오인될 수 있는 명칭이라면 해당 명칭을 사용하는 직원을 업무집행책임자로 보아야 할 것이며, 회사 내부적인 목적에 따라 달라지지는 않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75)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지배구조 감독규정」 제12조 제3호 괄호에 기술된 단서 문구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
회답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의 적용을 받는 대상 기관의 범위는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를 의미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및 하위법규(이하 '지배구조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금융회사의 건전한 경영과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기하고, 예금자, 투자자, 보험계약자, 그 밖의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input type="checkbox"/> 지배구조법 제2조 제1호에서 지배구조법령의 적용을 받는 대상기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09)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카드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지분을 취득 시 금산법 제24조에 따라 미리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의 사실상 지배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하여 알려드립니다</p> <p>① (제1호) 귀사는 최대주주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음</p> <p>② (제2호)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p> <p>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함</p>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u>사안의 경우 귀사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으며, 승인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u></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귀사는 1)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이하, '금산법') 제2조 제1호 차목, 동법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으로서 2) 다른 회사인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의 3) 의결권 있는 주식을 100분의 5 이상(11.8%)을 소유하게되므로 4)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는 금산법 제24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p> <p>○ 귀사가 빅데이터 플랫폼 운영 공동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지와 관련해서는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해보아야 합니다.</p> <p>① 우선,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1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하여, 귀사는 투자자들 중 주식소유비율이 제1위가 아니므로 해당되지 않습니다.</p> <p>②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는지와 관련해서는</p> <p>○ 우선 법 문언상 '주식의 분산도'를 지배관계 형성 판단기준으로 하므로 동일계열 금융기관이 지배관계를 형성할 정도의 지분을 보유하는 경우 금산법상 승인이 필요하다고 해석하며,</p> <p>○ 지배관계를 형성하는지 여부와 관련해서는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조 제3항의 '지배' 판단기준, 독점규제 및 공정경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 '사실상 사업내용 지배' 판단기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4항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판단기준 등 관련 입법례를 종합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p>

- | |
|--|
| <p>○ 귀사의 경우, 1) 의결권 있는 주식 30%이상 소유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되지 않으며, 2) 정관·주주간계약서 상 귀사가 이사 임면, 이사회 의결 등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단독으로 또는 다른 주요 주주와 계약 또는 합의하여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금산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2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p> |
|--|

법령해석 회신문(200277)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으로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도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동화회사는 설치법 제38조상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설치법 제38조에서는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을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관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유동화전문 유한회사의 경우 동 조항 제1호부터 제8호 및 제10호에 열거된 기관에 해당하지 않으며, 동 조항 제9호에 따라 관련 법령인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도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22)

질의 요지	<p>○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잔금대출) 취급 시 해당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주택매매가, 분양가액 등)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 가능 여부</p> <p>→ "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취급하는 경우 실제 주택 구입 시의 소요자금(분양가, 매매가 등)과는 관계없이 소유권이전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한다면 "구입목적 주담대"의 LTV 기준만 준용되면 되는 것인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므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은행업감독규정」 <별표 6> 제2호 가목 및 현재 시행중인 금융행정지도(「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 관리기준」)에 의거 소유권 이전일과 주택담보대출 취급일자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의 용도가 주택구입 목적인지, 주택구입 외 목적인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18] 5호 바목에 따라 주택담보대출은 주택담보대출 취급시의 시세를 기준으로 대출가능금액을 산정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대출 취급시 시세가 주택을 구입하기 위해 소요된 금액보다 크다면 주택구입에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여 주담대 취급이 가능합니다.</p>

금융소비자

법령해석 회신문(200416)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법 시행령의 개정("20.08.25)으로 인하여, P2P연계대부업자가 일반금전대부업자로 금융위에 등록을 갱신한 경우에도 대부업법상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P2P연계대부업자라고 하더라도 일반금전대부업으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한 경우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됩니다.</p> <p>○ 다만, 기존 P2P연계대부업자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이하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일 이후 금전대부업자로 등록갱신한 경우에는 등록갱신시점의 P2P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 부칙 제4조에 따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이하 "온투업자") 등록을 마쳐야하는 '21.8.26일까지는 총자산 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법 제7조의3은 금융위에 등록한 대부업자의 경우, 충분한 자기자본 확보없이 무분별하게 대출을 확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총자산이 자기자본의 10배를 초과하는 것을 금지("총자산한도규제")하고 있고</p> <p>○ 동법 시행령 제4조의4제2항은 P2P연계대부업자로 등록한 경우에는 보유 대부채권 전부의 원리금수취권을 자금제공자에게 이전한 경우(이하 "P2P자산") 총자산에서 제외하도록 예외를 인정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온투업법 시행일인 '20.8.27일부터는 온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온투업자로 등록해야 하며, 대부업법에 따른 P2P연계대부업자로의 신규등록이나 등록갱신은 제한됩니다.</p> <p>○ 다만, 온투업법은 시행일("20.8.27) 당시 P2P연계대부업을 영위하던 자에 대해서는 온투업법에 따른 등록을 위한 신청 및 심사에 시일이 소요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시행시점으로부터 1년 내에 온투업자로 등록하도록 하고, 등록시점까지는 미등록 영업에 따른 처벌을 유예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대부업법상 등록유효기간이 만료된 P2P연계대부업자가 대부업법에 따른 일반금전대부업의 형태로 금융위에 등록갱신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총자산한도규제가 적용됩니다.</p>

- 다만, 이 경우 등록갱신시점의 P2P자산액에 한하여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1년)이 종료되는 '21.8.26일까지는 총자산한도 계산시 총자산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이는 ① P2P자산은 그 성격상 대부업법령에서 총자산한도 규제를 통해 규율하고자하는 취지와 맞지 않은 점, ② 이에 따라, 기존 P2P연계대부업자의 경우 P2P자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해온 점, ③ 예외 불인정시 기존 영업 방식이나 규모에 변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자본을 일시에 충당해야하는 부담이 발생하는 점 등을 감안함과 동시에, ④ 온투업법상 처벌유예기간 동안 온투업 정식 등록 없이 P2P자산 규모를 지속적으로 증가시키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등록갱신시점의 P2P자산액의 범위내에서만 제외토록 허용하는 것입니다.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령해석 회신문(190076)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등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 금융정보법')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신원확인 등을 위한 정보 제공을 거부한 경우 금융회사등의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거래 종료 의무와 관련하여,</p> <p>① (질의1) 특정금융정보법(제5조의2제4항)에 따른 거래종료 대상 거래가 고객확인을 시행하게 된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고객과 사이에 이미 존재하는 모든 거래관계를 의미하는지 여부</p> <p>② (질의2) 보험계약의 경우 거래 종료의 의미가 기납입보험료의 일부를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약'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기납입보험료를 모두 반환하고 거래를 종료하는 '해지'를 의미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확인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거래 관계를 수립하고 있는 고객이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동조 제4항에 따라 그 고객과의 모든 거래관계를 종료하여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거래의 종료'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p> <p style="padding-left: 20px;">○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닌 바, 법률에 따른 종료사유임을 감안하여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4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4조에서는 금융회사등은 이미 거래관계는 수립하였으나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할 것을 규정하고 있으며,</p> <p style="padding-left: 20px;">○ 이는 고객이 고객확인을 위한 정보제공을 거부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없는 경우라면 그 고객의 자금세탁 등의 위험이 높을 개연성이 존재한다고 보아 금융회사등이 그 고객과의 거래관계를 종료하도록 규정한 취지임을 감안할 때 특정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모든 거래 관계를 의미한다고 봄이 타당할 것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거래의 종료'란 문언 그대로의 거래 종료를 의미하는 것이며,</p> <p style="padding-left: 20px;">○ 이는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인 고객확인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고객이 명시적인 거부 의사 등을 표시함으로써 불가피하게 금융회사등이 법률상 의무(고객확인)를 이행할 수 없는 사정이 발생할 경우 법률이 정한 바에 따라 그 고객과의 거래를 종료하도록 한 것으로서(회사의 귀책사유 발생으로 약정상 또는 채무불이행에</p>

따른 거래를 종료하는 것과는 달리 법률에 따른 종료 사유임), 금융회사 등은 말씀하신 사례를 판단함에 있어 이러한 사정을 감안할 수 있을 것입니다.

- 보험계약의 거래관계 종료에 따른 환급금 등의 처리 문제는 특정금융정보법에서 규율하고 있는 사항이 아니며, 보험계약을 다루는 관련 법규를 고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265)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 텔레마케팅 등의 경우 유선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녹취+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으로 비대면 고객거래확인을 수행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상황(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의 경우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비대면 거래에서도 실제 소유자 확인을 포함한 자금세탁방지 관련 고객확인제도는 오프라인에 준하는 정도의 고객확인을 실행하여야 합니다.</p> <p>○ 이를 위해, 아래 유권해석 사례집('18.02월)에 제시하였듯이, 비대면 거래 시 ①~④ 중 2가지를 의무 적용하여야 하며, 그 외 추가적으로 ①~⑥ 중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한 방식으로 추가 확인토록 권고하고 있습니다.</p> <p>* 복수의 비대면방식 [자금세탁방지 유권해석사례집('18.02월), 48번 등] (이중확인-필수) ① 신분증 사본 제출, ② 영상통화, ③ 접근매체 전달시 확인, ④ 기존계좌 활용 중 2가지 의무 적용 (다중확인-권고) ⑤ 타 기관 확인결과 활용(휴대폰 인증 등), ⑥ 다수의 개인정보 검증까지 포함하여 이미 선택한 2가지를 제외하고 ①~⑥ 중 추가 확인</p> <p><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상황 유선녹취 + 신분증 진위여부 확인(고객이 유선상 불러준 실명번호 및 신분증 데이터로 실명확인작업 수행)]의 경우 상기 복수의 비대면방식 중 의무로 적용해야 하는 ①~④ 중 2가지를 수행했다고 볼 수 없어 이 방법을 적절한 비대면 고객확인 수행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288)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 제1항에 따라 확인된 실제 소유자에 대하여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p> <p>○ 또한 검증의 수단으로서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 인터넷 정보, 기업정보제공 서비스 등을 활용할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및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하며, 이는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하는 차원의 이용 가능한 다양한 검증수단과 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금융회사등은 정부가 발행한 문서 외에도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문서·자료·정보 등을 통하여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p> <p>○ 이는 금융회사등이 실제 소유자를 충실히 확인해나가는 과정을 통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방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것이며, 반드시 실제 소유자인 자연인에 대한 실명확인증표 확인 등 개인고객에 준하는 검증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닙니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정부가 발행한 문서는 검증 수단 중 하나의 예시로서 금융회사등은 검증 자료의 신뢰성과 독립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법으로 실제 소유자를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입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32)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상품권카드와 같은 신유형 상품권의 법적 성격을 「전자금융거래법」(이하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출시 또는 약관변경 시,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21조에 의해 고객확인 의무가 면제 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카드가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발행되는 것이라면,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 대상이 아니고, 귀사는 고객이 실제 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포함하여 고객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특금법은 금융회사등이 고객확인을 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면서(법 제5조의2), 동법 시행령에서 금융거래의 성질상 그 적용이 적절하지 아니하거나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에 이용될 가능성이 현저히 적은 금융거래로서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확인 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p> <p>○ 금융정보분석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고객확인이 면제되는 금융거래에 전금법 제23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본문에서 정하는 선불전자지급수단 발행을 포함하고 있어, 귀사가 발행하는 상품권 카드가 이에 해당하는 경우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됩니다.(시행령 제10조의2 제1항 및 감독규정 제21조 제6호)</p> <p><input type="checkbox"/> 다만, 특금법 제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고객확인은 면제대상이 아니고, 귀사는 고객이 실제소유자인지 여부가 의심되는 등 고객이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예컨대, 상품권카드의 다량 구매 또는 단기간 반복 구매 등)에는 금융거래의 목적과 거래자금의 원천 등을 포함하여 고객확인을 하고, 그 정보를 보존·관리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의2 및 제5조의4)</p> <p><input type="checkbox"/>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서 이와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3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 확인의무를 ①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는지 여부 및 ②자금세탁 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 제53조에 따른 이행요건의 세부내용*</p> <p>* 동 규정 제53조 제1호의 고객확인과 관련된 정보에 주민등록증 사본이 포함되는지 여부 및 동조 제2호의 자료를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만 제공하면 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53조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3자인 타 금융회사등에 위탁하여 고객확인을 할 수 있으며,</p> <p>○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에는 업무규정 제53조 제2호에 따라 금융회사등의 요청 시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이란 금융회사가 자신을 대신하여 제3자로 하여금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거나, 제3자가 이미 당해 고객에 대한 고객확인을 통해 확보한 정보를 자신의 고객확인에 갈음하여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업무규정 제52조).</p> <p>○ 업무규정 제53조 제3호에 따라 제3자는 자금세탁방지등과 관련하여 감독기관의 규제 및 감독을 받고 있고, 고객확인을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어야 합니다.</p> <p>○ 또한, 제3자를 통한 고객확인의 경우 업무규정에 따른 이행요건을 준수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업무규정 제53조), 특히 제3자 고객확인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고객확인 의무 대행에 대해서도 업무 위수탁 계약이 체결되어야 합니다[자금세탁방지제도 유권해석 사례집 (2018.2), p.104].</p> <p><input type="checkbox"/> 업무규정 제53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객확인과 관련된 필요한 정보’는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규정된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금융회사등이 확인하여야 하는 정보를 의미하는 것이며,</p> <p>○ 업무규정 제53조 제2호에 따라 주민등록증 사본 등 고객확인과 관련된 문서사본의 경우 금융회사등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3자로부터 지체없이 제공받아야 합니다.</p> <p>○ 이는 문언 그대로 금융회사등이 관련 문서사본을 요청할 경우 제3자는 지체없이 이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며, 타 금융회사가 제3자로서 고객확인 업무를 대신하는 경우에도 특정금융정보법 상 고객확인 의무 이행과 관련한 최종적인 책임은 업무를 위탁한 당해 금융회사등에 있으므로(업무규정 제54조)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것입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71)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가족관계에 있는 대리인이 내방하여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의 실명확인증표와 가족관계확인서류 외에 본인(예금주)의 실명확인증표 필요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를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4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고객이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 고객 확인의무가 있으며,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대리인 권한이 있는지 확인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검증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이는 특정금융정보법상에 규정된 고객확인으로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상에 규정된 실명확인과는 별개의 의무사항입니다. <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계좌의 신규 개설시 특정금융정보법상 고객확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리인 뿐 아니라 본인의 실명확인증표도 징구하여 본인 및 대리인의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06)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1) 역외펀드, 역외일임 CDD 관련 공문(기획행정실-228, 2019.2.8)이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 (2) 해당 공문이 금융투자협회에만 송부됨에 따라 공문을 받지 못한 국내은행이 공문의 내용에 따른 CDD를 수행하지 못하였을 때의 불이익 여부 (3) 국내은행에 적용이 된다면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를 갖추어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해당 해석은 업권을 달리하여 적용하지 않음에 따라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며,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시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과 실제 소유자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역외펀드 또는 역외일임투자자와 같이 외국에서 외국 법령에 따라 조성된 자금의 국내 투자시 고객확인이 되는 고객에 대한 구체적인 업무 가이드라인 제시 차원에서 금융정보분석원은 2019년 2월에 역외펀드와 역외일임 고객확인 대상이 되는 고객 및 실제 소유자에 대한 해석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해당 공문은 개별 업권에 상관없이 동일 기능 동일 규제 원칙에 따라 본 해석을 적용하는 취지로 금융투자상품·업자를 담당하는 금융투자협회에 송부되었는 바, 유사한 상품 판매에 관여하거나 기능을 수행하는 국내은행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p> <p>○ 고객확인과 관련하여 위반에 따른 제재 여부에 대하여는 사안별로 상이함에 따라 일반적으로 해석하기 어려우며, 소명이 필요한 경우 감독 또는 검사자에 설명하여야 할 것입니다.</p> <p>○ 또한 고객확인 관련하여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는 내부통제 절차 마련에 업권별로 차이를 두지 않으므로 국내은행 역시 역외펀드와 역외일임을 구분하여 고객확인을 수행하여야 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30)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이행해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p> <p>○ 이때, 보고대상은 고객이 현금등을 직접 금융회사등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등으로부터 받는 거래가 대상이며, 계좌간 이체 등은 대상이 아닙니다.</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전자금융업자가 은행의 송금서비스를 이용하여 1천만원 이상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에 따른 신용카드대금 정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는 금융거래 상대방에게 직접 현금등을 지급한 경우가 아니므로 해당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에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72)

질의 요지	<p>□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및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규정(이하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른 실제 소유자 확인 검증 자료로 신용정보회사에서 조회된 자료(해당 자료가 최신 정보임을 전제로 할 경우)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p>
이유	<p>□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나목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고객확인 시 실제 소유자를 확인하여야 하며, 업무규정 제41조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신뢰할 수 있고 독립적인 관련정보 및 자료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하고 검증하기 위한 합리적인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p> <p>○ 금융회사등은 이를 고려하여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및 자료 등 관련 절차를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으며, 진위 여부 등에 대하여도 책임이 있습니다.</p> <p>□ 신용정보회사의 자료가 신용정보법을 준수하여 관련 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을 확보하고 있다면 금융회사등은 실제 소유자 확인 및 검증 자료로 이를 활용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p>

기타(공동소관)

법령해석 회신문(190046)

질의 요지	<p>①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한지 여부</p> <p>②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상 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경우</p> <p style="padding-left: 20px;">○ 동 발급이 같은 법 제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고객확인 대상 중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일회성 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p> <p>③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 가능여부</p>
회답	<p>① 여신전문금융업법은 신용카드업자가 발행하는 선불카드의 발급 자격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 관광객을 대상으로도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합니다.</p> <p>② 금융회사 등이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은 '계좌를 신규로 개설'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p> <p>③ 신용카드업자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추가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를 발급하는 것에 대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p>
이유	<p>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8호에 따라 선불카드는 신용카드업자가 대금을 미리 받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록하여 발행한 증표로서 카드소지자가 가맹점에 제시하여 기록된 금액의 범위에서 결제할 수 있게 한 증표입니다.</p> <p style="padding-left: 20px;">○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에서는 선불카드의 발급가능 조건 등에 명시해둔 바가 없으므로 단기비자로 입국한 외국인들 역시 관련 법령을 준수할 경우 신용카드업자에게 선불카드 금액에 상응하는 대금을 지급하고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②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 제2항에서는 법 제5조의2 제1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계좌의 신규 개설'은 금융회사 등과 금융거래를 개시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일회성 금융거래'는 금융회사 등과 계속하여 거래할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고객에 의한 금융거래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 충전이 가능한 기명식 선불카드는 일회성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충전을 통하여 계속적으로 사용 가능한 형태이므로 이는 계속적 금융거래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계좌의 신규 개설'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금융회사 등은 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에 따라 고객확인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③ 여신전문금융업법 및 하위 규정은 1원이 충전된 상태의 기명식 선불카드 발급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발급이 가능합니다.

○ 다만, 선불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카드사의 경영상태를 부실하게 할 수 있는 모집행위나, 여행사 등에 대한 과도한 서비스 제공 등으로 건전한 영업질서를 해치는 행위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금지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272)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 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을 목적으로 카드론 정보, 의심 거래정보, 계좌 입출금 거래 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p> <p>○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거래가 의심되는 고객의 개인신용정보, 카드론, 계좌 입출금 등 금융거래정보를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289)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현금유통, 유사수신과 같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금융지주회사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것이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른 고객의 동의가 필요 없는 내부 경영관리 목적의 고객정보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간에 불법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공유하는 행위는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2제1항에서 규정한 내부경영관리 목적의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제4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 및 그 자회사등(이하 “금융지주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거래정보 및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정보를 그가 속하는 금융지주회사등에게 “내부 경영관리상 이용하게 할 목적”에 한해 고객의 동의 없이 제공할 수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제27조의2 제1항에 따르면 “내부 경영관리”란 고객에게 상품 및 서비스를 소개하거나 구매를 권유하는 업무가 아닌 업무로서 ①신용위험관리 등 위험관리와 내부통제, ②업무 및 재산상태에 대한 검사, ③고객분석과 상품 및 서비스의 개발, ④성과관리, ⑤위탁업무에 해당하는 업무를 의미합니다. <input type="checkbox"/> 금융지주회사 소속 자회사가 불법매출 대응을 위해 불법매출(의심) 회원의 금융거래정보 등을 다른 자회사에게 제공하는 것은 금융거래와 관련한 금융사기 등의 예방을 위한 것으로, 이를 상기 금융회사의 내부 경영관리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7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당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개인사업자의 가맹점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 (나이스평가정보가 당사로부터 제공받은 가맹점정보를 기초로 개인사업자 신용평가모형을 개발 예정)</p> <p>* 사업자등록번호, 매출 정보 등 가맹점주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는 제공하지 않음</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에 따라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나이스평가정보에 신용조회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가능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제32조 제1항은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한편, 귀사가 나이스평가정보에 제공하려는 정보는 사업자등록번호, 매출정보 등 기업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개인신용정보의 제공에 관련하여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법 제32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여전법 제54조의5 제2항에서는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경우에는 “기업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도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14)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가 추진하는 ‘금융 표준종합정보DB 데이터 개방체계 구축 사업’을 위해 당행과 거래 중인 법인기업에 대한 기업개요, 재무제표 등의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정보의 업무 목적 외 이용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하므로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신용정보법 제42조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은 신용정보회사등과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받자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조항입니다. <input type="checkbox"/> 공공데이터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는 공공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이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별첨) <input type="checkbox"/> 귀 행이 제공하려는 신용정보가 공공데이터법에 따른 공공데이터에 해당하는 경우, 귀 행이 보유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는 것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해당하므로 신용정보법 제42조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에 누설 및 이용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



수신 금융위원회위원장(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
(경유)

제목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 회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금융위원회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4(2020.1.14.)호 관련,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해석 요청에 대한 답변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데이터법 제17조제1항은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공공데이터를 국민에게 제공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은 공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기관의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공공데이터제공책임관 및 실무담당자를 임명해 해당 기관의 업무와 관련하여 공공데이터의 관리·제공·이용 관련 업무총괄 및 지원(제12조제2항제3호), 그 밖에 공공데이터의 제공을 위한 관련 업무(제12조제2항제5호)를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면 질의하신 ‘금융위원회 소관 공공기관’이 공공데이터법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하는 공공기관에 포함될 경우, 공공데이터의 제공은 공공기관의 업무에 속한다고 할 것입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전산사무관

류경민

공공데이터정책팀 2020.1.16.

최재장

남호성

참조자 행정사무관 박진혁

시행 공공데이터정책팀-232

접수 금융공공데이터담당관-27 (2020.1.16.)

우 30116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 (어진동)

/ <http://www.mois.go.kr>

전화번호 044-205-2292

팩스번호 044-204-8921

/ bestab@mail.go.kr

/ 대한민국 공개

법령해석 회신문(200052)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개발사업을 하는 조합에 투자자로 참여하고, 해당 조합의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신탁업자로서 자산관리, 자금관리 업무 등을 수행할 수 있는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상 부수업무 신고가 필요한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이익을 목적으로 부동산 개발사업에 투자하고, 동 개발사업 부지를 수탁받아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상 부동산신탁회사가 영위할 수 있는 고유업무, 겸영업무 및 부수업무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6조 제9항, 제9조 제24항은 신탁업이란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동법 제40조는 금융투자업자의 겸영업무를, 동법 제41조는 금융투자업자의 부수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을 위해 조직된 조합(이하 “조합”)에 신탁회사의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상황에서, 해당 부동산신탁회사가 조합으로부터 해당 개발사업 부지를 신탁받아 자산관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영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동 사안과 같이 고유재산을 투자하여 개발사업의 수익자로 참여한 신탁회사가 해당 개발사업의 주체로서 자산관리 업무 등을 영위하는 것은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신탁회사의 고유업무 및 겸영업무로 보기 어려우며, 수익자의 이익 등을 위해 신탁재산의 관리·개발·처분 등 법률행위를 하는 부동산신탁회사의 고유업무와의 이해상충이 발생할 우려 등이 있어 자본시장법이 허용하는 부수업무로 보기도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위와 같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 개발사업의 투자자·수익자이자 수탁자로서 개발사업에 참여하는 것은, 토지 개발능력 등이 부족한 법인·개인 등이 소유한 부동산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하기 위한 부동산신탁제도의 도입 목적 및 부동산신탁업 인가 취지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288)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해외 자회사의 차입 지원을 위한 카드사의 예치금 담보 제공이 금융지주회사법 및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카드사의 특수관계인에 대한 신용공여에 포함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 제1항제11호에 따른 지급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므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서는 “신용공여”를 대출, 지급보증 또는 자금 지원적 성격의 유가증권의 매입, 그 밖에 금융거래상의 신용위험이 따르는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직접적·간접적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에서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되는 거래를 구체적으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조 제11호에서는 "채무보증"에 대해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타인의 채무이행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행하는 보증·배서·담보제공·채무인수·추가투자 의무·매입보장약정·유동성공급계약·신용파생상품에서의 보장의 매도,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해외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이 해외 자회사의 차입 등 채무이행을 간접으로 보장하기 위한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에 따른 채무보증과 경제적 실질이 유사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2조의4제1항제11호에서 열거하고 있는 지급보증으로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에 따른 신용공여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또한, 예치금의 담보 제공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에서 규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자금증개 등의 행위에도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92)

질의 요지	<p>①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해외발행 신용카드·직불카드 또는 체크카드의 수납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정의) 제3호 다목'에 위배되는지 여부</p> <p>② 해외에서 발행한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debit card) 또는 체크카드(check card)로 카지노에서 결제시 승인금액이 1,000만원의 고액일 경우 카지노 사업자에게 '특정 금융정보법'상 고액현금거래보고 의무와 승인한도 금액이 있는지 여부</p> <p>③ 외국인 전용 국내카지노에서 고객이 해외 발행 신용카드로 결제하여 국내카드사가 USD로 승인·매입 후 국내카지노에 USD로 대금이 입금되는 경우, 카지노고객에게 잔여 칩 등을 USD로 환불하여 주는 행위가 '특정금융정보법'에 저촉되는지 여부</p>
회답	<p>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 다목에 따라 국내카지노가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②외국인만을 대상으로 ③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p> <p>②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 현금등의 물리적인 이동이 없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해당 거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에 따른 고액 현금거래 보고 대상이 아닙니다. 더불어 특정금융정보법은 신용카드 등의 승인한도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③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지 위한 법으로, 금융회사등과 고객 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 다만,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p>
이유	<p>①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2에 따른 사행성게임물의 이용 대가 및 이용에 따른 금전의 지급을 신용카드 결제금지 대상으로 규정하되, 예외적으로 외국인이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받은 카지노영업소에서 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습니다.</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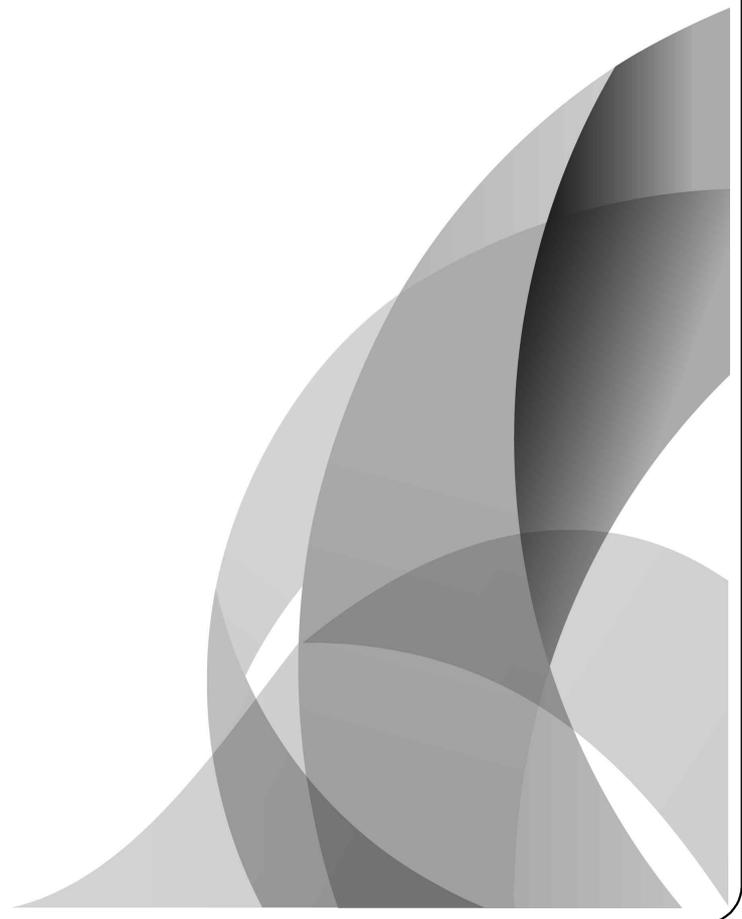
- 따라서 국내카지노가 ① 「관광진흥법」에 따라 허가를 받았으며 ②외국인만을 대상으로 ③외국에서 신용카드업에 상당하는 영업을 영위하는 자가 발행한 신용카드만으로 거래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수납이 가능합니다.
- ② 특정금융정보법 제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1천만원 이상의 현금등을 금융거래의 상대방에게 지급하거나 그로부터 영수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30일 이내에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합니다.
 - 이때, 현금등의 지급이나 영수라 함은 금융거래에 수반하여 금융회사등과 금융거래 상대방 사이에서 현금등이 물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을 말하며,
 - 현금등의 지급과 영수를 수반하는 금융거래를 취급한 당해 금융기관등은 보고기관으로써 해당 고액 현금거래 보고를 수행해야 합니다.
- ③ 특정금융정보법은 금융거래를 이용한 자금세탁행위와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규제하는 데 필요한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범죄행위를 예방하고 나아가 건전하고 투명한 금융거래 질서를 확립하는 데 이바지하기 위한 법으로, 금융회사등과 고객사이의 신용카드 결제나 환불 등의 행위의 허용이나 금지 여부를 규정하고 있진 않습니다.
 - 다만, 카지노사업자나 전자금융업자를 비롯한 금융회사등은 금융거래의 상대방에 대한 고객확인을 수행하고 자금세탁행위나 공중협박자금조달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그 사실을 금융정보분석원장에게 보고하는 등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32)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하지는 않은 외국법인이 자회사·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설립·변경보고 의무를 가지는지
회답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 및 제3조제6항에 따른 설립·변경보고 의무는 금융기관이 직접 설립하지 않은 경우로서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자·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금융기관의 해외진출에 관한 규정 제3조제2항은 금융기관이 설립한 현지법인이 타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에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input type="checkbox"/> 제3조제6항은 제2항에 따라 보고한 현지법인의 지점·자회사·손회사의 보고내용을 변경하거나 이들을 청산하는 경우에는 변경(청산) 보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이러한 보고의무는 금융기관이 해외직접투자를 하였으나, 직접 설립(사실상 설립에 준하는 경우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로서 금융기관이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현지법인이 자·손회사를 추가 설립하는 경우에까지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2

은행



법령해석 회신문(190019)

질의 요지	<p>①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되는지 여부</p> <p>② 또한, 은행이 겸영업무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 여부</p> <p>*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금융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금융관련 업무로서 해당 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에 해당하더라도 동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6호에서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바 상충되는 것 아닌지 여부</p>
회답	<p>①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p> <p>②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 및 법제처의 법령해석에 따라 귀 농협은행은 겸영업무로 사전 신고를 거쳐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상의 농식품투자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p>
이유	<p>①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3항의 ‘금융관련법령’은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령을 의미*하며,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제10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도 포함됩니다.</p> <p>* 은행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가목</p> <p>② 은행법 제28조제1항제2호에 따르면 은행은 금융관련법령에서 은행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할 수 있으며, 법제처의 유권해석에 따라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서 농협은행은 농식품투자조합 결성을 할 수 있으므로 은행법상 겸영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p> <p>○ 한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제2항제6호에서는 투자신탁을 통한 집합투자업만 겸영업무로 허용하고 있는데, 이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업 영위시 적용되는 것으로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조합 결성업무와는 별개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p> <p>○ 아울러, 해당 업무를 겸영업무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은행법 제28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운영하려는 날의 7일 전까지 신고가 필요하며, 신고내용은 동법 제27조의2제4항의 요건(은행 건전성, 이용자 보호, 금융시장 안정성 등을 저해하지 않을 것)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85)

질의 요지	<p>①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 ①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및 ②50:50으로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p> <p>② 또한, 이상 두 업무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④항3호 업무에 포함되지 않을 경우 동항 4호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 업무’ 에는 포함되는지</p>
회답	<p>① 은행법 제28조 제1항 제3호,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3호의 ‘기업의 인수 및 합병의 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 범위에는 경영권 취득 목적의 과반 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p> <p>○ 다만,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는 당해 합작법인 설립의 방법과 경영권행사 여부 등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p> <p>②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p>
이유	<p>① 은행법상 인수, 합병의 개념을 특별히 정의하고 있지 않으므로 수범자가 해당 용어를 통해 예측가능한 통상적인 의미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p> <p>○ 통상적으로 인수(acquisition)는 한 기업이 다른 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을 취득하면서 경영권을 획득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병(merger)은 두 개 이상의 기업들이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을 의미합니다.</p> <p>○ 이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 취득 목적이 있다면 기업이 다른 기업의 과반미만의 지분을 취득하는 행위는 인수의 개념에 포함될 수 있으며, 기업이 다른 기업과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행위가 인수·합병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사항이라고 봅니다.</p> <p>② 한편, 기업의 합작법인 설립에 대한 상담 및 조력은 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의 ‘기업의 경영, 구조조정 및 금융 관련 상담·조력업무’ 에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181)

질의 요지	<p>1.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p> <p>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p>
회답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p> <p>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보험사)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p> <p>* 입금계좌 예금주(송금받은 자)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은행제도과-154, '05.1.16.)</p> <p>다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합니다.</p> <p>2. 명의인(보험사)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p> <p>하지만,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보험사)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보험사)에게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p> <p>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 가상계좌에 입금한 실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p>
이유	상 동

법령해석 회신문(200006)

질의 요지	<p>1. 보험사가 본인 명의 계좌에 입금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계좌개설 은행에 요구하는 경우, 계좌개설 은행이 실입금자 성명 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p> <p>2. 보험사가 고객관리의 편의를 위해 가상계좌를 개설한 경우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에, 보험사가 은행으로부터 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p>
회답	<p>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의 서면상의 요구나 동의를 받아 그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정보 또는 자료(이하 “거래정보등”이라 한다)를 타인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동법 시행령 제7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명의인으로부터 거래정보등의 제공을 요구받은 경우에는 그 요구자가 명의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 거래정보 제공이 가능합니다.</p> <p>따라서, 질의한 사안에서 명의인(보험사)이 보험료를 입금한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입금계좌 개설 은행에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 해당 은행이 실입금자의 계좌를 개설한 은행에 실입금자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은 실입금자의 성명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가능합니다.</p> <p>* 입금계좌 예금주(송금받은 자)에게 송금한 계좌 명의인의 성명, 연락처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 참조(은행제도과-154, '05.1.16.)</p> <p>다만, 금융실명법 시행령 제7조 제3항에 따라,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확인 또는 거래정보등의 제공 과정에서 거래정보등이 다른 사람에게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명의인의 확인과 거래정보등의 제공에 관한 방법 및 절차를 정하여야 합니다.</p> <p>2. 명의인(보험사)이 금융실명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본인의 거래정보등을 금융회사에 요구하여 제공받기 위해서는 요구하는 정보가 금융거래에 대한 정보이어야 합니다.</p> <p>하지만, 가상계좌는 고객관리 등의 목적으로 은행이 거래관계에 있는 법인 등에게 발급한 계좌번호 형식의 전산코드이고 가상계좌 입금 시에는 예금원장에 입금이 기록되지 않으므로, 고객이 가상계좌로 입금한 보험료가 명의인(보험사)의 실명확인된 모계좌로 입금되기 전에는 명의인(보험사)에게 금융거래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p> <p>따라서, 가상계좌로 입금된 보험료는 금융실명법상 금융거래정보제공이 가능한 금융거래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험사의 실명확인된 계좌(모계좌)에 입금되기 전 가상계좌에 입금한 실입금자 성명 정보는 금융실명법상 제공대상 정보에 해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p>
이유	상 동

법령해석 회신문(200099)

질의 요지	<p>□ 은행이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2010. 11. 16. 금융위원회고시 제2010-40호로 타법폐지되기 전의 것]’ 폐지 당시 동 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 업무’ 를 영위하고 있었으면, 현행 은행법 제28조 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금융자문서비스를 제공하고 자문수수료를 수취할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 은행이 과거 ‘은행업무 중 부수업무의 범위에 관한 지침’(이하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동 지침의 폐지 및 개정된 은행법시행령 제18조의2 제4항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겸영업무로 전환되었다면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하지 않아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p>
이유	<p>□ 舊 은행업감독규정[금융위원회고시 제2010-39호, 2010. 11. 5., 폐지제정.] 부칙 제6조는 이 규정의 시행에 따라 종전의 부수업무지침은 폐지하고, 이 규정 시행 당시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는 부수업무로서 겸영업무로 전환된 업무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p> <p>○ ‘금융관련 상담 및 조력업무’가 은행이 영위 가능한 업무로 도입(‘03.7.3)된 입법취지*를 고려할 때</p> <p style="margin-left: 20px;">* 형평성 유지를 위해 다른 금융업종(증권·보험업)에서도 부수업무로 인정되고 있는 업무인 ‘기업구조조정 중개·주선·대리 및 자금조달 자문업무’를 은행의 부수업무로 허용(‘03.7.3 ’은행 부수업무 확대 및 정비’, 재정경제부 보도참고자료)</p> <p>○ 부수업무지침에 따라 수행하고 있었던 ‘금융에 대한 상담 및 조력업무’는 현행 은행법상 겸영업무로 신고 없이 수행 가능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50)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p> <p>* 은행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디지털 사이니지, 객장TV, 태블릿PC, 순번 표시기 등)를 이용하여 광고대행</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은행이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재산상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은행은 은행이용자에게 은행업무, 부수업무, 겸영업무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하여 재산상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은행법 제34조의2, 은행법 시행령 제20조의2), 정상적인 수준의 재산상 이익 제공을 하는 경우에도 미리 준법감시인에게 보고 하여야 합니다.(은행업감독규정 제29조의3 제1항)</p> <p>○ 이 때 재산상 이익이란 금전·물품 뿐만 아니라 편익 등 무형의 재산도 포함되며, 정확한 재산상 이익의 산출이 어렵다고 하여 보고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p> <p>○ 예컨대 부동산의 임대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는 점(은행법 시행령 제18조)을 들어 임대목적으로 사용하는 부동산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에는 이익 제공 보고 대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귀 은행이 영업점내 디스플레이 장치를 활용하여 법인 및 개인사업자에 대해 무료로 광고 대행을 하는 경우 은행법상 재산상 이익제공 행위에 해당되어 이익제공 보고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p> <p>○ 참고로 이 경우 이익산정은 통상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광고대행을 했을 때 받을 수 있었던 금액(기회비용)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201)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업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업무용 부동산의 옥외 전광판을 통한 광고대행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은행의 부수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옥외광고사업자에게 은행 소유 부동산의 옥외전광판을 임대하는 행위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업에 해당하여 신고 없이 운영 가능한 부수업무에 해당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옥외전광판은 「은행법」 제38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제4항 제4호의 ‘부대시설’에 해당하여 업무용 부동산으로 볼 수 있으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는 은행의 광고대행업 영위 가능 범위는 서적, 간행물 외 인터넷 홈페이지 및 전산설비 등 물적 설비의 활용에 한정되기 때문입니다. ○ 은행은 부수업무로서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11호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동산을 임대할 수 있습니다. <p>※ 기존 금융위원회 법령해석 회신(160902)과 동일한 해석 유지</p>

법령해석 회신문(200286)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은행이 자체 제작한 금융관련 교육 콘텐츠(영상, 교육자료 등)를 판매하는 업무가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해당하는 부수업무인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업무는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에 따른 부수업무에 해당하므로, 금융위원회에 별도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은행법」 제27조의2 제2항 제9호는 ‘금융 관련 연수,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를 은행이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금융 관련 연수’에는 오프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강의 콘텐츠를 제작하여 온라인으로 연수를 진행하는 것을 포함됩니다. 또한 도서 및 간행물 ‘출판’업무를 신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부수업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금융 관련 연수’에는 금융관련 교육 콘텐츠를 제작하여 판매하는 경우까지 포함된다 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58)

질의 요지	<p>□ 여권법 개정에 따라 여권에 수록되는 정보에서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여권과 함께 외교부의 여권정보연계시스템을 통해 주민등록번호 등을 확인한다면 금융회사가 명의인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3조 등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여권의 수록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그 즉시 여권법 제23조의2 등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의 장인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등으로 거래자의 '주민 등록번호'를 전송받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이 정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이유	<p>□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금융실명법”) 제3조 제1항에 따라 금융회사등은 거래자의 실지명의(이하 “실명”)로 금융거래를 하여야 합니다.</p> <p>□ 금융실명법 제2조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호가 규정한 실지명의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은 “주민등록증 발급대상자는 주민등록증. 다만, 주민등록증에 의하여 확인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 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교육기본법」에 따른 학교의 장이 발급한 것으로서 ‘실지명의의 확인이 가능한 증표’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포함한 주민등록표 초본과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증표에 의하여 확인한다.”고 규정하고, ○ 동항 제5호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실지명의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 관계 기관의 장의 확인서·증명서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증표·서류”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 위와 같은 법령의 규정 내용에 따르면, 금융회사등이 여권의 수록 정보를 이용하여 거래자의 '성명'을 확인하고, 그 즉시 여권법 제23조의2 등에 따른 여권정보연계시스템(여권이 국내에서 신분증명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여권번호를 바탕으로 한 여권의 진위 여부 확인 및 여권 명의인의 신원 확인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을 통해 관계 기관의 장인 외교부장관으로부터 전자문서 등으로 거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전송받아 확인한 경우에는, 금융회사등이 금융실명법이 정한 거래자의 실명을 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93)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은행의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내부 절차를 거쳐 제공하는 경우, 「은행법」 제21조의2에서 금지하는 비공개정보의 ‘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으로부터 경영계획, 예산, 실적 및 유상증자 관련 사항을 제공받는 경우,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하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은행 임·직원이 대주주에 대한 정보 제공시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인터넷전문은행에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 제1호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누설”이란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임의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의미한다는 것이 판례*의 입장이므로</p> <p style="margin-left: 20px;">* 대법원 2018.10.4. 선고, 2018도613</p> <p style="margin-left: 20px;">○ 임·직원이 정해진 절차와 내부 판단과정을 거쳐 자료를 제공한 경우에는 「은행법」 제21조의2상의 누설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인터넷전문은행법 제10조는 인터넷전문은행의 대주주가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는 바,</p> <p style="margin-left: 20px;">○ 그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조항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다만, 구체적인 자료 또는 정보가 인터넷전문은행의 이익에 반하는지 여부는 자료 또는 정보의 내용, 인터넷전문은행에 미치는 영향 등을 개별적·구체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428)

질의 요지	<p>□ 고객이 A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것이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이하 ‘유사수신행위법’)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 고객이 A회사의 포인트를 매월 정기적으로 구매하여 충전하는 경우 충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으나,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p>
이유	<p>□ 유사수신행위법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를 받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업으로 하면서 원금보장약정 등을 하는 경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으로 처벌됩니다.</p> <p>□ 귀사가 매월 정기적으로 포인트를 구매하여 충전하는 고객에게 충전에 따른 혜택으로 일정비율의 추가 포인트를 지급하거나, 상품을 현물로 제공하는 행위는 유사수신행위법 상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될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나, 질의내용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법 적용 요건을 상세히 알 수 없어 확정적으로 답변드릴 수 없음을 양해바랍니다.</p> <p>□ 또한, 유사수신행위법 위반여부는 수사기관 등이 당해 행위에 대한 구체적 사실관계를 확정된 후 최종적으로는 법원 등 사법당국이 동 행위의 영업성, 행위의 목적, 규모, 회수기간, 태양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리며, 법원은 법령해석 회신에 기속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p>

3

보험



법령해석 회신문(190252)

질의 요지	<p>□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 경제적 혜택을 현물(상품)으로 지급하는 경우, (i)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이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는지, (ii)판매채널(온라인 플랫폼, 대형마트, 소매상 등)에 따라 금품의 판매금액이 상이할 경우 판단 기준은?</p>
회답	<p>① 부가가치세는 일반인이 금품 구매시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비용인 만큼 금품의 한도기준(3만원)에 부가가치세는 포함됩니다.</p> <p>② 특별이익의 가액은 일반인이 별도의 조건(회원제, 대량구매, 특가 이벤트 등)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이유	<p>① 일반인이 동일한 유형의 금품 구매시에 부가가치세가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만큼, 특별이익 해당여부 판단시에도 동일하게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p>② 보험회사 구매가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보험회사별로 동일 '금품'을 제공하면서도 규제준수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p> <p>○ 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입법 취지와 규제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비자의 입장에서 체감하는 금품의 가액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므로 일반인이 별도 조건 없이 동종의 금품 구입시 소비되는 금액을 기준으로 금품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19)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고객에게 해당 보험상품의 보험료를 할인 받을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의 특별이익의 유형 중 제1호의 ‘금품’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제2호의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환금성 없이 보험료로만 사용이 가능한 쿠폰의 경우 특별이익의 유형 중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금품’이란 ‘현금’과 ‘물품’을 의미하며 금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환금성, 범용성 등의 특성을 고려하여야 합니다.</p> <p>○ 보험료 할인 쿠폰의 경우 보험료 납부 이외의 목적으로는 이용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범용성 등이 인정되지 않아 ‘금품’에 해당하지 않으며, ‘보험료의 할인’에 해당한다고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참고로 「보험업법」 제98조는 제공이 금지되는 특별이익 유형 중 하나로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p> <p>○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기초서류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유에 근거하여 고객에게 보험료 할인 쿠폰을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31)

질의 요지	<p>□ 가입전 진단을 필수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미 피보험자가 건강검진을 받아 진단비용을 절감*하는 경우, 절감된 진단비용 내에서 상품권, 포인트(3만원 이상) 등을 제공하는 것이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라 금지되는 특별이익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p> <p>* 대용진단 프로세스 : 유진단 계약의 진단절차를 피보험자가 병원이나 검진센터에서 검진받았던 결과지로 대체</p>
회답	<p>□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므로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p>
이유	<p>□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p> <p>○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p> <p>□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보험계약 인수 심사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시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일련의 과정이며, 해당 금품이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일부 고객에게만 지급된다는 점을 감안할 때</p> <p>○ 건강검진 결과지를 제출하여 진단비용을 절감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상품권, 포인트 등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보험업법」 제98조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44)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가 소유·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은행 내에 설치*하여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을 통한 판매에 해당하는지 여부</p> <p>* 은행, 백화점, 전시장 등 공공장소에 설치된 무인 정보단말기로 여행자보험, 다이렉트 자동차보험 등의 상품정보 등을 제공하며, 은행에 설치 시, 임대차계약을 통해 보험가입건수와 무관한 정액의 임대료 지급 예정</p>
회답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는 직접 소유·관리하는 방식의 무인 키오스크 운영은 가능하나,</p> <p>○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 점포 내에서 이를 운영하는 것은 「보험업감독규정」 제4-39조제4항제1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내용 중 무인 키오스크의 운영 형태 및 방법 등이 특정되지 않아, 무인 키오스크가 「보험업법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한 “사이버몰”에 해당되는 것으로 전제하고 답변을 드립니다.</p> <p><input type="checkbox"/> 현행 「보험업법」은 전화·우편·컴퓨터통신 등 통신수단을 이용한 보험 판매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통신수단 방식을 제한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p> <p>○ 이에, 같은 법 제95조의2(설명의무 등), 제96조(통신수단을 이용한 모집·철회 및 해지 등 관련 준수사항) 등 「보험업법」상 보험 모집관련 준수사항과 「상법」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상 설명의무 등이 적법하게 이행될 경우 무인 키오스크를 통한 보험상품 판매가 가능할 것이라고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보험회사가 직접 관리하는 무인 키오스크를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은행의 점포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p> <p>○ “당해 금융기관 보험대리점 등의 본점, 지점 등 점포 내에 보험회사 임직원, 보험설계사 또는 다른 보험대리점, 보험중개사를 입주시켜 모집을 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4-39조제4항제1호가목의 취지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62)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대리점의 지점과 원거리에 별도의 사무실 공간을 마련하여 원거리에 거주하는 소속 설계사들이 이용하도록 하는 경우, 해당 사무실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여 별도 신고의무를 이행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보험회사의 전산비품지원이 가능한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아래 이유와 같음</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 감독규정」 제4-11조의2는 보험대리점 지점의 정의를 “보험대리점의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원거리에 위치한 사무실이 보험대리점의 지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i)보험대리점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설비를 갖추었는지 여부, (ii)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가 이루어지는지 여부에 따라 개별·구체적으로 판단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p> <p>※ 첨부된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2012)>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2.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설치 매뉴얼

이 매뉴얼은 '금융감독원 보험업무 00319, 2012.8.29'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설치 신고의무 준수를 위한 협조요청>과 관련하여 생명·손해보험협회가 법인보험대리점 지점의 요건, 설치와 관련한 제반사항을 정한 매뉴얼입니다.

가. 지점의 정의 및 설치신고

(1)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이란?

- 본점 이외의 장소에서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추고, 독립적이면서도 계속·반복적으로 모집행위를 하는 장소를 지칭
 - ※ 한편, 법인보험대리점은 상법상 회사이므로 그 지점 또한 상법상 지점*에 해당
 - * 본 점과 동일한 회사에 속 하며 본 점의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부분적으로 독립된 기능을 하는 지배인이 영업하는 장소

(2) 법인보험대리점의 지점 해당여부(예시)

사 례	지점설치 신고 여부
① 본점(타 지점 포함)과 동일건물내 층을 달리하여 사무실을 사용하는 경우	본점(타 지점 포함) 사무실과 동일 주소지이지만 분리, 독립된 공간*을 구비하고 있으므로 지점 신고 가능 * 층간 분리, 출입문 분리, 법인등기상 주소 분리 (ex. 201호, 202호)등
② 다른 법인보험대리점과 사무실 공간을 함께 사용하는 경우	타인의 영업장소로부터 독립적인 공간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수 없기에 지점 인정 불가
③ 본점과 원격지인 관계로 1~2명 소수인이 근무하는 사무실	계속·반복적으로 영업을 하는 장소이면서 영업에 필요한 물리적 공간과 설비를 갖춘 경우에는 지점 신고 필요
④ 개인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타 지역 사무소를 임대하여 근무	지점설치는 법인보험대리점만 가능

법령해석 회신문(200038)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는 선임계리사를 보조하는 인력을 2인 이상 두어야 하고, 다만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에 따라 금액이 5천억원 이상이며 1조원 미만일 경우 1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1조원 이상이며 5조원 미만일 경우 2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5조원 이상일 경우에는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함.</p> <p>이 경우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가 두어야 하는 선임계리사 보조인력의 수가 총 3인 이상인지, 5인 이상인지 명확히 하고자 함</p>
회답	<p><input type="checkbox"/> 5조원 이상에 해당하는 보험회사는 규정에 따라 총 5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두어야 함</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감독규정 제9-11조 제1항에서는 직전 사업연도말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의 금액이 5조원 이상일 경우 기본 보조인력 2명에 3인 이상의 보조인력을 '추가로' 두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해당 규정에서 기본 보조인력 2인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석 할 경우 보험료수익 또는 책임준비금이 5천억원 이하인 보험회사는 보조인력을 한명도 두지 않을 수 있으며 이는 선임계리사에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고자하는 규정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60)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 채널을 통하여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보험수익자)가 상이한 질병보험(사망을 보험사고로 하지 않음) 계약 청약시 보험 계약자 및 피보험자가 각각 따로 전자서명하고, 이를 각각 저장하여 청약을 완료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가능한지 여부</p> <p>○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은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모집하는 자가 보험 계약자로부터 전자서명, 그밖에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수단을 활용하여 계약자의 서명을 받도록 규율하고 있음</p> <p>○ 보험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질병보험 계약과 관련하여 보험 계약자로부터 서명을 받는 방법을 피보험자에게도 준용할 수 있는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상이한 보험계약과 관련하여서도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이 준용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질병보험에 대해서도 상법 제731조가 준용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제9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4항의 취지는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자’가 <u>서명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신뢰성과 안정성이 확보된 수단으로 한정하여, 의사와 무관한 보험계약이 임의로 체결되는 등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u>입니다.</p> <p>○ 이러한 방법은 보험업법령에 따라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하여 명시적으로 허용되는 방법이므로, 피보험자로부터 서명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준용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상법 제7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의2는 <u>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피보험자로부터 동의를 받는 방법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바,</u></p> <p>○ <u>상법 제739조의3*</u>에 따라 해당 규정이 질병보험에도 준용되는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의 의견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상법 제739조의3) 질병보험에 관하여는 그 성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생명보험 및 상해보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61)

질의요 지	<p><input type="checkbox"/>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 및 「보험업 감독업무시행세칙」 제 2-34조의2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을 함에 있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정하고 있는데, AI 음성봇(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기계음으로 질문하고 고객이 답변하는 내용을 녹취하는 형식)도 전화(음성 통화)와 동일한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p> <p>* (i)전화 등 음성통화, (ii)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p>
회답	<p><input type="checkbox"/> AI 음성봇이 보험업법령상 완전판매 모니터링의 방법 중 하나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는 해당 AI 음성봇의 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에 대한 판단에 기초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현행 규정상으로는 완전판매 모니터링(해피콜)의 방법을 <u>전화 등 음성통화, 컴퓨터, 모바일 단말기 등 전자적 방법</u>으로 한정하고 있어, AI 음성봇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AI 음성봇의 경우, <u>기술적·물리적 구현 방식이 「보험업 감독규정」 제4-35조의2에서 정하는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지에 대해 개별적·구체적 사안별로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u> 생각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45)

	<p>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에도 모집종사자의 해당 업무지원 행위를 '모집'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p> <p style="font-size: small;">* 보험대리점, 보험설계사 등 ** 입찰공고 확인, 현장 실사, 보험료 산출(보험사 검증) 등</p>
질의 요지	<p>② 질의1의 모집종사자의 업무지원 행위가 모집이 아니더라도, 입찰 완료 후 보험계약 체결시 또는 체결이후 해당 모집종사자를 취급자로 지정(계약자의 동의를 득함)하여, 모집수수료로 지급할 수 있는지?</p> <p>③ 질의2의 모집수수료 지급이 불가하다면, 보험사가 업무위탁의 형식으로 입찰 관련 제반 업무를 모집종사자에게 위탁하여, 각 보험사 기준에 따라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수 있는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아래 이유와 같음</p>
이유	<p>① 입찰방식에 의한 보험계약시, 모집종사자가 입찰참가를 위한 제반준비를 수행(이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하되 투찰 등 입찰참가는 모집업무를 위탁한 보험회사의 명의로 참가한 경우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에서 정의하는 '모집'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험업법」 제2조 제12호, '모집'의 정의에 따라 모집은 보험계약체결의 대리 혹은 중개 행위에 해당되어야 하나,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보험계약자와 보험회사간의 보험계약체결 관계에서 특정 보험회사와의 보험계약체결에 조력하는 행위가 없는 등 사회통념상 거래의 알선·중개행위라 보기 어려워 「보험업법」상 모집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상이할 수 있으므로, 입찰계약의 성격,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의 범위 등 그 행위의 실질에 따라 모집으로의 판단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p>② 모집수수료는 보험회사가 보험계약 모집에 대한 대가로 지급하는 비용으로 사업비 중 계약체결비용의 일부에 해당하므로, 모집이 아닌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해당된다면 모집수수료 지급은 불가능합니다.</p> <p>③ 모집이 아닌 단순한 '입찰참가 제반준비 행위'에 대해 위탁계약 체결 등을 통한 위탁수수료 지급은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위탁계약 체결, 위탁수수료 지급 등에 대한 합리적 내부통제절차를 사전에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58)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현재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을 조건으로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제공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고객이 희망하는 경우 '포인트'로 전환하여 다양한 용도에 사용하게 하는 행위가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보험료 할인'의 '포인트' 전환을 고객이 차별 없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고객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해당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u>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채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u>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기초서류에 근거하여 고객이 보험료 자동이체 납입 시 제공되고 있는 '보험료 할인'을 <u>고객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포인트'로 전환하여 이용하도록 하는 것으로서,</u></p> <p style="margin-left: 20px;">○ <u>특별이익 제공 금지 규정의 취지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u></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이 경우에도 '포인트 전환' 관련사항을 기초서류에 반영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u>고객이 해당사항을 명확히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한 관리절차가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u></p>

법령해석 회신문(200183)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A은행은 사기대출 등으로 인한 위험에 대한 담보 목적으로 C보험사의 권리 보험에 가입하려고 함</p> <p><input type="checkbox"/> C보험사는 A은행 관련 보험인수 여부 결정을 위해 B신용조사회사에 당해 대출건의 위험도 평가와 관련한 신용조사 업무를 위탁하려고 함</p> <p><input type="checkbox"/> 이때, B신용정보회사와 A은행이 동일 금융지주 내의 계열사인 경우, 신용조사 업무 위탁과 관련하여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수수료 지급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신용조사 업무 위탁 관련 보험사의 신용조사회사에 대한 수수료 지급은 「보험업법」상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입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u>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u>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사항의 경우, C보험사가 B신용조사회사에 제공하는 <u>수수료는 위탁한 신용조사 업무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므로 「보험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u></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이 경우에도 <u>보험계약 체결의 대가로 특정 신용조사회사와 신용조사 업무 위탁계약을 체결하거나 통상적인 신용조사 업무 수수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 금지 원칙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u></p>

법령해석 회신문(200231)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①보험회사가 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해 보험료할인 혜택을 부여하는 경우 「보험업법」 제129조(보험요율산출의 원칙)의 계약자 간 부당한 차별 등에 해당하는지?</p> <p><input type="checkbox"/> ②보험회사가 자사 스포츠단의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을 적용하는 저축보험을 판매하는 것이 「보험업법」상 특별이익 제공에 해당하는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①<u>특정기간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u>, ②<u>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 혜택을 제공하는 경우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u></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제98조 특별이익 제공 금지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이는 보험계약의 신규 체결과정에서 모집조직간 과당경쟁 등 <u>모집질서 저해, 재무건전성 악화, 고객간 형평성 저해</u>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사항처럼, ①<u>특정기간(경기시즌)에 가입한 계약자에 한하거나</u>, ②<u>보험사고 발생위험과 무관한 스포츠단 성적에 따라 우대금리, 보험료 할인 등을 제공하는 것은</u></p> <p style="margin-left: 20px;">○ <u>모집질서 및 고객간 형평성 저해 등 우려가 있는 만큼 특별이익에 해당할 소지가 높은 것으로 판단됩니다.</u></p>

법령해석 회신문(200260)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u>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룰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룰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룰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u></p>
회답	<p><input type="checkbox"/>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며,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유권해석 200356 답변과 동일합니다.(금융규제 민원포털 '20.11.6일 등록)</p>

법령해석 회신문(200317)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가 「보험업법」상 보험 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는 「보험업법」상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법」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 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제87조제1항은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가 금융위원회에 등록하도 록 규율하고 있으며, 같은조제2항은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하는 자를 정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제87조제2항 및 「보험업법 시행령」제32조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 의 검사를 받는 금융회사는 보험대리점이 될 수 없으며, 예외적으로 「보험업 법」제91조에 따라 은행, 상호저축은행 등은 금융기관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또한, 「보험업법 시행령」제32조제1항제2호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이 사실상 지 배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을 통해 관련 규제(25%를 등)를 회피하 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법인의 보험대리점 등록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할부금융회사의 경우 위 규정에 따라 직접 보험대리점으로 등록할 수 없으나, 할부금융회사가 설립한 자회사의 경우에는 별도로 보험대리점으로 등록을 제 한하고 있는 바가 없으므로 보험대리점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할부금융회사의 자회사가 보험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보험업 법」상 모집에 관한 규정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부당한 계약체결을 유도하 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2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가 회사의 재무상황 등에 따라 ‘멤버십 크레딧*’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회사의 우수한 성과를 보험계약자와 공유하는 것이 특별이익에 해당하여 보험업법 제98조 위반인지 여부</p> <p>* 보험회사가 회사의 경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기초서류에 반영된 내용에 따라 보험계약자(사원)에게 보험계약 갱신시 보험료 할인(상계)을 제공</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내용을 바탕으로 검토한 결과, 모든 보험계약자가 회사의 사원 자격을 가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제98조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p> <p>○ 특별이익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개별적인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해야 하는 사항이므로 일의적으로 단정하기는 곤란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dotte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보험업법 제98조(특별이익의 제공 금지)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과 관련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여서는 아니 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u>금품(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품은 제외한다)</u> 2. <u>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하지 아니한 보험료의 할인 또는 수수료의 지급</u> 3. <u>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금액보다 많은 보험금액의 지급 약속</u> 4. <u>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료의 대납</u> 5. <u>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해당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의 대납</u> 6. <u>보험료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에 대한 이자 상당액의 대납</u> 7. 「상법」 제682조에 따른 제3자에 대한 청구권 대위행사의 포기 </div> <p><input type="checkbox"/> 그간 특별이익과 관련한 대법원 판례, 하급심 결정례, 법률의 기본 취지 등을 고려할 때,</p>

- 보험상품의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어, 모든 보험계약자에 대해 차별없이 제공되고
 -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단순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代價) 또는 단순히 보험유치를 위한 이익의 제공이 아닌 것으로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 등 보험계약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 보험회사는 그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을 통해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발생 위험을 체계적으로 측정·관리할 수 있어, 보험사고 발생위험의 변화에 따라 보험료의 할인·할증, 보험금의 지급 등의 조건을 보험상품의 기초서류 등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고,
 - 금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유동성, 수익성 등에 반하지 않고, 모집질서 문란 등 공공성을 과도하게 해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업법」 제98조에서 금지하는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있습니다.
- 질의하신 사항을 위 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 모든 보험계약자가 사원으로서 지위를 가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이 단순 보험모집에 대한 대가가 아닌 회사의 운영 및 재무적 성과에 기초한 이사회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점, 보험료 할인 혜택에 관한 내용이 보험상품 기초서류에 반영되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질의하신 사항은 「보험업법」 제98조에 따른 특별이익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 것으로 볼 개연성이 높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44)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에 따라, 보험회사 등은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p> <p>* 보험회사 또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은 대출을 실행함에 있어 차주에 대하여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감독원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차주가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관계인 포함)이 아닌 경우,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도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은 금지되는 행위의 요건으로 (i)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일 것, (ii)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요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이에 질의하신 “월납보험료가 대출금의 100분의 1을 초과하지 않는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1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차주가 중소기업 또는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인 경우에는 「보험업 감독규정」 제5-15조 제8항 및 제9항*에 따라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의 판매행위가 금지되는 만큼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p>* (제8항)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제56조의2제5호에서 “차주인 중소기업,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차주 및 차주의 관계인”이란 차주인 중소기업, 차주인 신용등급이 낮은 개인과 차주의 관계인 중 중소기업의 대표자를 말한다.</p> <p>(제9항) 영 제48조제1항제4호 및 영 제56조의2제5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란 대출실행일 전후 1개월 이내에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행위를 말한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56)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에서 정하고 있는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당행)의 영업기준과 관련하여,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 33% 합산 틀만 준수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33% 합산 틀을 준수함과 동시에 각 생명보험회사별로 25% 틀도 준수하여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2개 생명보험회사의 최대주주가 동일한 경우,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은 2개 생명보험회사 상품의 신규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기준만 준수하면 되고, 최대주주가 동일한 생명보험회사 각각에 대한 25% 기준은 적용되지 않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법 시행령 제40조제6항 및 제7항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특정 생명보험회사(또는 손해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일정비율을 넘지 못하도록 하는(소위 25%를) 규제를 정하고 있고, 동 규제의 비율은 2005년 이후에 기존 49%에서 25%로 강화되었습니다. ○ 또한, 최대주주가 동일한 보험회사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2개 이상의 보험회사에 대해서는 각 보험회사 상품에 대한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이내가 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2005년 이전에는 합산하여 49% 이내가 되도록 규율) <p><input type="checkbox"/> 동 보험업법 시행령에 대한 해석과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령이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회사에 대해 2개 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유지해야 하는 의무와 함께, 각각의 개별 보험회사 모집총액에 대해 25%를도 함께 적용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명시적 규정이 없어 그에 대한 유권해석이 필요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p><input type="checkbox"/> 이에 대한 적용기준은 과거 25%를 규제의 개정연혁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년 당시 정부는 보험업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33% 이내로 적용하는 규제와 함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각의 보험회사 상품의 모집총액을 25% 이내로 유지하도록 하는 규제도 함께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여 법령개정절차를 진행하였으나, ○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과정에서 개별 보험회사에 대한 25%를 규제는 삭제하는 것을 권고함에 따라, 그 권고를 수용하고 동 규정을 삭제한 바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최대주주가 동일한 2개 생명보험회사에 대해서는 2개 생명보험회사의 모집총액을 합산하여 신규모집총액의 33%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규제만 준수하면 되는 것으로 규제를 적용하고 있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67)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에 한정하는 것인지, 국내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 '보험회사의 외국환거래기준'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이 역외 집합투자업자뿐만 아니라 국내 집합투자업자와의 계약까지 포함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보험회사의 외국환 거래시 충족해야 하는 기준을 정하는 것은 보험계약자의 자산을 운용함에 있어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입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와 관련,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은 그 거래상대방이 국내 또는 해외 집합투자업자인지를 불문하고 '외화표시 자산'의 운용 일임에 따른 위험이 동일하게 발생하므로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 따른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합니다. ○ 따라서 국내 집합투자업자와 체결한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도 보험업감독규정 [별표8]에서 언급하고 있는 '외화표시 자산운용 일임계약'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22)

질의 요지	<p>□ 보험업법 시행령 부칙*에 의거 사채발행한도 특례를 인정받고 있는 보험회사가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로 발행하는 경우,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는지 여부</p> <p>* 부칙 제2조(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 2019년 6월 30일 현재 자기자본을 초과하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 보험회사는 제58조 제3항의 개정규정도 불구하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다음 각 호의 금액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현재 자기자본 2. 2019년 6월 30일 현재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회답	<p>□ 보험회사가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 총 발행한도에 관한 특례'를 적용받는 경우, 특례에서 부여받은 한도 내에서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중도상환하고, 동일 금액의 후순위채권을 신규발행 한다면 사채발행한도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이유	<p>□ 「보험업법 시행령」 제53조 제3항은 보험회사가 사채를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을 한도로 발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 조항은 2019년 6월 개정을 통해 사채의 범위에 후순위채권 이외 신종자본증권을 추가하였습니다.</p> <p>○ 다만, 시행령 개정시 사채발행한도를 초과하게 된 보험회사는 개정규정의 특례로 '22년말까지 한도를 해소할 수 있도록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과 '2019년 6월 30일 기준 후순위채권 및 신종자본증권' 중 큰 금액을 한도로 사채 및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p> <p>□ 또한, 「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2항에서는 후순위채권을 기한이 도래하기 이전에는 상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다만, 동조 제5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거나 후순위채권을 상환한 후의 지급여력비율이 150% 이상인 경우 금융감독원장의 승인을 받아 후순위채권의 기한이 도래하기 전 조기상환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p> <p>*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조기상환 조항이 존재하거나 당사자간 합의 있을 것, 기존 후순위채권의 금리조건이 현저히 불리하다고 인정될 것, 기존 후순위채권이 유상증자 또는 금리조건 등이 유리한 후순위채권 등으로 대체될 것 등</p> <p>□ 따라서, 보험회사가 기존의 후순위채권을 조기상환하고, 동일 금액을 신규로 발행하려는 경우, ①보험업감독규정 제7-10조 제5항의 조건을 만족하고, ②특례에서 인정하고 있는 한도를 충족한다면 사채발행한도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p>

○ 다만, 특례 부여 취지 등을 고려할 때 보험회사는 '22년말까지 사채 및 신종자본 증권 총 발행액이 '발행일 기준 직전 분기말 자기자본' 이내가 되도록 내부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충실히 이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상기 의견은 질의하신 사항 만을 토대로 검토한 내용이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게 해석될 여지도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444)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업자가 대주주로서 보험회사를 설립하려는 경우,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전자금융거래법규에 따른 재무건전성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시기(반기)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아니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판단할 수 있는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업자가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되려는 경우,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4 대주주에 대한 세부요건 중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 기준과 관련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기관이 전자금융업자의 경우,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에 대한 기준시점을 명시하고 있지 않으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규상 전자금융업자는 반기별로 재무건전성 기준 준수여부에 대한 업무보고서(경영지도기준 보고서)를 금융감독원에 제출 ○ 금융기관이 은행, 보험회사 등인 경우, 명시적으로 “최근 분기말** 현재”를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은행)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 이상일 것 (보험회사)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전자금융업자의 경우에도 은행, 보험회사 등과 같이 보험업 (예비)허가 신청일에 가까운 최근 분기말을 기준으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이 경우에도 감사인 등 회계법인의 감사(또는 검토)를 받은 재무제표 및 동 재무제표를 기초로 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확인하는 등 대주주 요건(재무건전성 기준) 충족여부를 심사할 수 있는 객관적인 근거자료가 필요함을 알려드립니다.

보험업 감독규정 <별표 4> 대주주의 세부요건에 관한 기준

1. 대주주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융감독원의 검사를 받는 기관(사모투자전문회사는 제외하며, 이하 이 표에서 "금융기관"이라 한다)인 경우 (영 별표 1의 제1호 관련)
 - 가.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대차대조표상 자기자본이 출자하고자 하는 금액의 300%이상일 것
 - 나. 당해 금융기관의 재무건전성이 다음 기준을 충족할 것
 - (1) 은행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 비율이 8%이상일 것
 - (2)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영업용순자본비율이 100% 이상일 것
 - (3) 보험회사인 경우 최근 분기말 현재 지급여력비율이 100% 이상일 것.
 - (4) (1) 내지 (3)외의 금융기관인 경우 당해 금융기관에 적용되는 재무건전성기준을 준수할 것

4

중소

여신전문금융업

법령해석 회신문(190270)

질의 요지	<p>□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신용카드 서비스 내용, 연회비 등과 같은 거래 조건 외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면 이용 가능한 금융서비스의 상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사 공식 홈페이지의 금융 메뉴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할 수 있는지 여부(신용카드 회원 모집에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유통 권유행위가 포함되는지 여부)</p> <p>* 단기카드 대출, 장기카드 대출과 같은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유통의 대출 금리, 연체료율, 취급수수료 등</p>
회답	<p>□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유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유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유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유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8 제1항 8호에서 “신용카드회원을 모집할 때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자금의 유통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대출금리, 연체료율 및 취급수수료 등의 거래조건을 감추거나 왜곡하지 아니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신용카드회원의 모집행위와 자금의 유통을 권유하는 행위를 구별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3조에서 신용카드회원에 대한 자금의 유통을 신용카드업자의 부대업무로 규정하고 있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신용카드업과 구별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신용카드회원의 모집과 자금유통의 권유를 별개의 행위로 구별하고 있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의 취지, 신용카드회원의 모집 과정에서 자금유통을 권유할 경우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거래조건 등에 대해 충실한 설명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신용카드 회원을 모집할 때 자금유통 관련 조건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링크를 포함하는 등 자금유통 권유행위를 포함하는 것은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280)

질의 요지	<p>□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과 직접 계약을 체결하여 일반적인 부가통신 서비스 중 일부를 축소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가맹점수수료 중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신용카드사에 가맹점수수료로 제공하게 되며,</p> <p>○ 부가통신업자가 가맹점으로부터 별도로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해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이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24조의2제3항에 위반되는지 여부</p>
회답	<p>□ 부가통신업자가 VAN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 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이유	<p>□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는 부가통신업 수수료(VAN수수료)의 산정에 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VAN수수료는 부가통신서비스 원가, 서비스제공 내용 등을 반영하여 신용카드업자와 부가통신업자간 계약에 따라 결정될 수 있습니다.</p> <p>○ 따라서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수준 축소 등을 통해 서비스 원가를 절감하여 절감된 서비스 원가에 따라 해당 가맹점의 거래와 관련한 VAN 수수료를 낮게 책정하였다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제25조의4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용카드업자는 해당 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한 가맹점수수료를 산정에 VAN수수료 절감액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p> <p>○ 또한, 부가통신업자가 신용카드가맹점에 별도로 VAN업무의 일부에 대해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해당 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으로 수취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다만, 부가통신업자가 VAN수수료 절감액을 대형신용카드가맹점의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반영하여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의 절감액을 초과하여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가맹점결제관리서비스에 대한 이용료를 객관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수준보다 낮게 부과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4조의2제3항에 따른 부당한 보상금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04)

질의 요지	<p>□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그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계열회사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할 경우 그 투자금액을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에서 정하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대주주(해당 계열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계액 또는 동법 제50조에 정하는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금융회사의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4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만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제41조제1항5호 및 제44조제1항1호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의 관리·운용을 담당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그러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직접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해당 기업에 대한 투자여부를 결정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대주주에 대한 과도한 자금지원을 제한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취지를 고려할 때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인 신기술사업자에게 투자하는 경우에도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직접 해당 회사에 투자하는 경우와 동일하게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에 따라 신용공여 제한 및 대주주 발행주식 취득이 제한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6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아닌 기술지주회사와 신기술금융업자가 공동으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설립하고 운용하는데 제한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기술지주회사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인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14의5호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와 공동으로 출자(가목)하였거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조합(나목)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4조제항제1호 단서에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 자금 운용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조합자금을 운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반드시 참여하고 있어야 하나, 기술지주회사 등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외의 자도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조합자금을 관리·운용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15)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카드사의 회사, 로고, 카드번호, 카드명의인 이름 등을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신용카드 앞면에는 제휴사 로고를 표시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위반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해당 카드가 발급되는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게 표시하여 광고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50조의9 제2항 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 여전법상 금지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여전법령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여신금융상품을 광고하는 경우 광고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 등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사실을 숨기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광고하는 행위(여전법 제50조의9 제2항 2호), 해당 여신금융상품의 내용상 금융이용자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상황을 왜곡·과장·누락하거나 모호하게 나타내는 표현을 사용하여 광고하는 행위(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이와 관련, 카드사의 명칭이나 로고를 신용카드 뒷면에 표시하고 제휴사 로고를 신용카드 앞면에 표시하여 광고할 경우 소비자가 카드를 발급한 카드사와 제휴사를 혼동할 가능성이 높습니다.</p> <p>○ 따라서, 신용카드에 글자 크기, 위치 등을 달리 하는 방법 등을 통해 소비자가 발급 카드사와 제휴사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한 경우에만 여전법 제50조의9 제2항 2호 또는 동법 시행령 제19조의14 제3항 3호 등의 위반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44)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업무 등록 후 초기 창업자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및 보육업무를 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41조 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4의2호에서는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에 대해 초기 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을 주된 업무로 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여전법 제41조 제1항에서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의 업무로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제1호),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경영 및 기술의 지도(제3호)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기획자(액셀러레이터) 등록을 통해 수행하는 초기창업자 등의 선발 및 투자, 전문보육 등이 여전법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투자, 경영 및 기술의 지도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76)

질의 요지	<p>□ 코로나19에 따른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기업이 법인 신용카드(정부 및 지자체에서 경비 집행 등에 사용하는 신용카드를 포함한다)를 이용하여 일정 조건*하에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이전에 신용카드로 결제(조기 결제)하는 행위가 「여신전문금융업법(이하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제2호의 신용카드가맹점 금지행위 및 같은 법 제21조의 신용카드사의 가맹점 해지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p> <p>* 대상(법인 신용카드), 기간('20.12월) 한정, 선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p>
회답	<p>□ 법인 신용카드회원과 신용카드가맹점 간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을 약정하고 약정된 기간 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다면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에서 금지하고 있는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다만,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에 해당될 소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신용카드 결제 이후 실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 서류 등의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p> <p>- 나아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p> <p>○ 한편,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카드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점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이유	<p>□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에서 신용카드가맹점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이 없이 신용카드로 거래한 것처럼 꾸미는 행위를 하거나 신용카드로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p> <p>○ 같은 법 제70조제3항제2호에서는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등을 가장하는 행위 또는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거나 이를 대행하게 하는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융통하여 준 자 또는 이를 중개·알선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 현행법상 신용카드회원의 결제 시점과 신용카드가맹점의 물품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시점이 반드시 일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신용카드를 이용한 불법 현금유통 행위와 그 행위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신용카드를 통한 가장 또는 허위거래를 금지하고 있는 여전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그간 신용카드 조기결제(先결제)가 일반적·공식적으로 허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는 경우를 전제하고 있어 가장 또는 허위매출로 볼 수 없는 점,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의 유동성 지원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하여 일정 조건* 하에 시행되는 점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여전법에 위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대상(법인 신용카드), 기간('20.12월) 한정, 선결제 약정 체결, 사후에 물품·용역의 판매·제공을 서류 등으로 입증

○ 다만, 이 경우에도 결제 대상이 된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반드시 이행되어야 할 것이며 추후 실제 물품이 판매되거나 용역이 제공된 사실에 대해 서면 등 자료로 증빙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 만일 신용카드 결제 이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실제 물품의 판매나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이는 여전법 제19조제5항제1호 또는 제2호 위반 소지가 있으며,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을 가장하거나 실제 매출금액을 넘겨 신용카드로 거래하는 등의 행위를 통해 자금을 유통하거나 이를 중개·알선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한편, 신용카드로 조기결제 하였음에도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이 이루어지기 전 신용카드가맹점이 도산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는바, 이러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해 철회 또는 항변권이 보장되거나 신용카드업자와 법인 신용카드회원 간 별도의 약정이 있지 않은 한 조기결제에 따른 카드결제대금의 부담은 해당 법인회원이 지게 된다는 사실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94)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이용자가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콘텐츠제공업체가 제공하는 콘텐츠를 이용한 경우 그 이용 요금을 통신과금사업자가 콘텐츠제공업체에 전액 선납부한 후, 개별 이용자들에게 원리금(콘텐츠이용료+이자액)을 월 분납받는 서비스를 시행하는 경우</p> <p>○ 할부거래법상 ‘간접할부’에 해당하여 제6조제2항 하단의 신용카드사 특칙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p> <p>○ 이용자와 콘텐츠제공업체간 콘텐츠 이용계약을 ‘매매계약’으로 보아 해당 사업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용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지급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할부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할부거래법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소관하고 있으므로 소관 부처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13호에서는 “할부금융”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용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p> <p>○ 귀하가 콘텐츠 제공 계약에 대하여 이용자 및 콘텐츠제공업체와 각각 약정을 체결하고 이용자에게 용자한 이용액을 콘텐츠제공업체에게 직접 지급하고 이용자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경우 “할부금융”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23)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 포함)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는 적용되지 않으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9조의2 및 제50조는 신기술사업금융회사를 포함한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 대주주에 신용공여를 하거나 발행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적용되며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규율하고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동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자금중개 등의 행위를 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을 통해 대주주에 투자하는 경우에도 해당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또한,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은 신기술사업금융회사가 업무집행조합원으로 참여하여 투자대상기업에 대한 의사결정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업무집행조합원이 나머지 조합원에 대하여 부담하는 선관의무, 이해상충 이슈 등을 고려하여 조합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투자하도록 하는 등 규약내용에 해당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40)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기존 법령해석(일련번호 150336 등)에 따르면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기업 보호 등의 취지를 감안하여 신용카드업자는 카드매출채권을 담보로 활용하는 대출상품 또는 담보 설정을 하지 않더라도 실질적으로 담보 대출과 유사하게 운영하는 대출상품은 영위할 수 없음</p> <p><input type="checkbox"/> 신용카드업자가 영세가맹점 사업자의 주말 운영자금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대출 가능 대상과 한도 등 조건을 제한하여 가맹점 대상 주말대출을 영위하고자 하는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세가맹점을 대상으로 주말(토요일 및 일요일 한정)에 지급되지 않는 카드매출대금의 일정부분을 한도로 대출을 시행한 뒤, 익 영업일부터 해당 가맹점에 지급해야 할 카드매출대금으로 주말 대출 원리금을 자동 상환하는 구조의 단기 대출상품을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영위할 수 있는지 여부를 질의
회답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신용카드사는 대출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영위 가능한 대출업무의 범위, 한계 등에 대한 규정은 없으나, 신용카드업자의 대출업무 영위시 신용카드 시장에서의 건전한 거래질서 확립, 영세한 중소기업 보호 등 여신전문금융업 법령의 취지를 감안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귀사에서 영위하고자 하는 단기 대출상품의 경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신용카드업자가 전표를 매입한 날부터 1영업일 이내 카드매출대금을 지급하고 있는 영세가맹점*(연매출 3억원 이하)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카드사가 가맹점에 카드결제 대금 지급을 고의로 지연하고 대출을 통해 이자 수익을 얻기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 제6조의13제2항제1호에 따른 신용카드가맹점 ○ 가맹점의 카드매출 취소율, 신용리스크 등을 감안하여 기 발생한 카드결제 대금의 일정수준으로 대출한도를 정하고 있고 주말에만 대출 신청이 가능하며, 영세가맹점 사업자가 고의로 허위매출을 하거나 주말 중 도산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발생하지 않는 한 사업자의 연체 가능성이 적으며,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원자재 구매비 등을 위한 단기자금이 필요한 영세가맹점 등을 대상으로 카드매출 대금에 기초한 대부업체 등의 고금리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용카드업자가 운영경비 등 필요비용만을 반영한 대출상품을 운영하는 경우 영세가맹점의 이자부담을 완화하고 유동성 애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 범위 내에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신용카드업자가 가맹점을 대상으로 영위할 수 있는 대출로 보입니다.

□ 다만, 신용카드업자는 매주 동 대출상품을 통해 주말 운영자금을 조달하는 가맹점 사업자의 신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주말에 가맹점에 카드대금을 지급하기 위해 카드사에 소요되는 비용을 대출금리에 합리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며, 영세 가맹점 사업자의 전체 카드매출 대금 중 일정 부분*에 대해서만 운영자금 용도로 주말 중 지급함으로써 사업자가 익 영업일에도 카드매출 대금 일부를 수령하여 현금흐름이 일정수준으로 유지되도록 하는 등 가맹점 사업주 보호를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예) 가맹점 전체 카드매출 대금의 50% 이내 등

법령해석 회신문(200148)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품 구매시 여전사의 할부·대출 상품을 통해 결제할 수 있도록 결제대행업체(PG사)와 제휴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해당 거래 유형이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규정하는 할부금융업에 포함되는지 여부</p> <p>* 할부/대출상품 신청이 완료되면 할부/대출금을 온라인 쇼핑몰에 직접 송금하는 것이 아닌 제휴 PG사로 송금하고, 이를 해당 PG사에서 각 온라인 쇼핑몰에 정산하는 방식으로 거래</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회사가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용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할부금융업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3호에서는 “할부금융”에 대해 재화와 용역의 매매계약에 대하여 매도인 및 매수인과 각각 약정을 체결하여 매수인에게 용자한 재화와 용역의 구매자금을 매도인에게 지급하고 매수인으로부터 그 원리금을 나누어 상환받는 방식의 금융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p> <p>○ 귀하가 질의한 서비스의 경우 소비자 및 결제대행업체와 각각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에게 용자한 이용액을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으로, 매도인이 아닌 결제대행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는 점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상 할부금융업의 정의를 충족하지 않습니다.</p> <p>○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5호나목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는 신용카드업자와 계약을 체결한 범위 내에서 신용카드등에 의한 거래를 대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매도인의 거래를 대행할 수 있으며, 할부금융 거래는 결제대행업체가 매도인을 위하여 대행할 수 있는 거래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아울러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제2항에서는 할부금융업자가 할부금융자금을 할부금융의 대상이 되는 재화 및 용역의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할부금융자금을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지 않고 결제대행업체에 지급하는 것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0조제2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01)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폐지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상 여신협회 사후보고절차 또는 금감원 사전신고절차를 경료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상 금융약관의 폐지시에 거쳐야할 절차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여신전문금융업법 제54조의3제1항은 여신전문금융회사가 금융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금융약관의 폐지시 거쳐야 할 절차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금융약관이 폐지될 경우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기존 고객들은 약관 확인의 어려움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금융약관의 적용을 받는 고객이 있는 경우에는 금융약관을 폐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호저축은행업

법령해석 회신문(200002)

질의 요지	<p>당 저축은행이 소유한 상표권을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그 이용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는 것이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저축은행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사가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상표를 계열사에서 사용하고 계열사로부터 상표권에 대한 사용료를 수취하고자 합니다. 2. 저축은행은 영리를 목적으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만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사의 지적재산인 상표권의 사용료 수취가 동법 동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에 해당되는지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이 없습니다. 3. 따라서 계열사의 상표권 사용료 수취가 상호저축은행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업무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질의합니다.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문의하신 계열회사에 대한 상표권 제공은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업무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p> <p>○ 다만, 동법 제11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는 경우 동 업무를 영위할 수 있습니다.</p> <p>참고로, 「상호저축은행법」 제3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8호에서는 승인을 금융감독원에 위탁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업무) 제1항은 저축은행이 수행 가능한 업무를 나열하고 있고,</p> <p>○ 동항 제16호는 부대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을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상호저축은행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15호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지만 문의하신 업무를 영위하고자 할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금융감독원 위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39)

질의 요지	<p>「주택시장 안정대책(18.9.13)」 시행 전에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주택을 담보로 사업자금 대출을 취급하였는데, 위 대책 시행 후 만기연장을 위하여 대환하는 경우 기존 담보 인정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례①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09.11 취급)이 대주주 및 상호 변경으로 폐지됨에 따라 '19.11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조건은 기존과 동일) · 사례② :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상품('17.6월 취급)이 내부 정책상 폐지되어 '18.12월 만기연장 시 다른 상품으로 대환(조건은 기존과 동일)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문의하신 기존 개인사업자 담보대출 대환 건은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 이므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에서 정의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 따라서, 기존대출 대환 시 강화된 LTV 기준이 적용되지 않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주택안정대책("18.9.13) 관련 금융부문 FAQ 17번 문항은 “기존 주담대의 단순 만기 연장의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며, 감독규정상 신규대출로 보는 경우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는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상호저축은행업 감독규정 별표5(주택관련 담보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기준) 신규대출의 정의에서는 “대출을 기한 연장하는 경우와 금리 또는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재약정·대환 등은 신규대출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대출 건들의 경우 만기 조건만 변경되는 대환에 해당하여 강화된 LTV 규제가 적용되는 신규대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14)

- (질의1) A저축은행이 아래 구조의 펀드를 그룹 계열사와 함께 투자하는 경우 ①지분 구조 등을 고려할 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하는지, ②이에 따라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이하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를 적용해야 하는지?

구분	출자자	출자금액	지분율	비고
LP 1	A저축은행	110억원	22%	대주주 A금융지주(100%)
	A은행	200억원	58%	대주주 A금융지주(100%)
A금융그룹 소계		400억원	80%	
LP 2	기타기관들	50억원	10%	
GP	A벤처스	50억원	10%	대주주 A금융지주(100%)
합 계		500억원	100%	

※ A저축은행 자기자본 : 2,000억원

- (질의2) 초기 투자 및 추가투자로 인해 펀드 구조가 아래와 같은 경우 해당 펀드의 저축은행 동일계열기업 여부 및 이에 따른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 적용여부

구분	출자자	초기 투자시		추가 투자후	
		출자금액	지분율	출자금액	지분율
LP 1	A저축은행	110억원	22%	110억원	14%
	A은행	110억원	22%	400억원	51%
A금융그룹 소계		220억원	44%	510억원	65%
LP 2	기타기관들	230억원	46%	230억원	29%
GP	A벤처스	50억원	10%	50억원	6%
합 계		500억원	100%	790억원	100%

질의
요지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30조(유가증권 보유의 제한) ① 상호저축은행(동일계열상호저축은행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18조의2 제1항 제1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유가증권(제2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A에 해당하는 유가증권은 제외한다.)을 매입·보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한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4. 비상장(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주식과 비상장 회사채의 합계액은 상호저축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이내
6. 상호저축은행의 동일계열기업의 주식 및 회사채의 합계액은 자기자본의 100분의 5이내

- (질의3) 만일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출자금 회수 등을 통해 위법사유가 해소 되는 것인지? 해소 기간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 (질의4) 펀드약정 상 출자금 회수가 불가하거나 펀드에서 출자금을 반환할 수 없는 상황 등이 발생하여 일정 기간 내 출자금 회수가 불가한 경우 당행 출자가 위법행위가 되는 것인지?

<p style="text-align: center;">회답</p>	<p><input type="checkbox"/> (질의1) 해당 펀드는 「상호저축은행법」(이하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어, 감독규정 제30조 제1항 제6호가 적용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2) 초기 투자 시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에는 지분 요건상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p> <p>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가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추가 투자 이전에라도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3, 질의4) 법 제18조의2 제1항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자기자본 변동 등 감독규정 제30조 제2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이유</p>	<p><input type="checkbox"/> (질의1) 해당 펀드는 저축은행의 대주주(100%)인 A금융지주가 100% 소유하고 있는 A은행이 58% 보유하므로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합니다.</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 style="text-align: center;">상호저축은행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5호</p> <p>상호저축은행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자(A금융지주)가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A은행)등 및 그 법인등이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출자한 법인등(해당 펀드)</p> </div> <p><input type="checkbox"/> (질의2) 초기 투자 시(A은행 지분을 22%)에는 해당 펀드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되지 않으나, A은행의 추가 투자 후(A은행 지분을 51%)에는 지분 요건 상 제30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됩니다.</p> <p>다만, 해당 펀드가 “저축은행 대주주의 사실상 그 경영을 지배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등으로서 금융감독원장이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정하는 기준(상호저축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12조)에 해당” 하는 경우 초기 투자 시부터 지분변동과 관계없이 시행령 제30조 제2항 제8호에 따른 동일계열기업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3, 질의4) 상호저축은행법 제18조의2 제1항(유가증권 보유 한도) 위반 시 동법 제24조 및 제39조 등에 따라 벌칙 및 임직원 처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p> <p>다만, 한도초과 사유가 감독규정 제30조제2항의 “자기자본의 변동, 합병 및 대주주의 변경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 초과할 경우”에 해당한다면 1년 이내(부득이한 경우 연장)의 해소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p>

5

자본시장



법령해석 회신문(190216)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업자가 ‘전문투자형 사모특별자산투자신탁’ 을 설정함에 있어 집합투자규약에 정한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는 투자자 1인과 투자자 적격을 충족하지 아니하는 투자자 1인, 총 2인으로 투자신탁을 설정한 경우 동 투자신탁이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의 투자신탁의 해지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p> <p style="margin-left: 20px;">*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p>
회답	<p><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 및 동법 시행령 제224조의2는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는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수익자의 총수가 1인이 되는 경우 지체 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고 그 해지사실을 지체 없이 금융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자본시장법 제192조제2항제5호가 적법하게 성립한 투자신탁의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투자신탁을 해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2인 이상의 투자자로부터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아니하면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투자대상자산을 취득·처분, 그 밖의 방법으로 운용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여 귀속시키는 ‘집합투자’ 의 의의에 비추어 볼 때, 수익자가 1인이 되는 경우 이를 집합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투자신탁을 해지하라는 취지로 이해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문의하신 내용은 투자신탁계약상 투자자 적격 등과 관련한 사항으로 제192조제2항제5호 투자신탁의 해지사유가 직접적으로 적용되는 사안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284)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엠브렐러 구조로 만들어진 해외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상위 집합투자기구와 하위집합투자기구 중 어느 것을 기준으로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이 적용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통상 엠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제81조제1항제3호마목은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각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으로 같은 집합투자기구(제279조제1항의 외국 집합투자기구를 포함한다)의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투자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각 국의 펀드제도상 구체적인 펀드구조에 대한 개별적인 검토가 필요하나, 통상 엠브렐러 구조에서 하위 집합투자기구별로 투자전략, 투자대상자산 등을 달리하는 점 등을 감안시 자본시장법 제18조제1항제3호마목의 운용제한은 하위집합투자기구를 기준으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09)

질의 요지	<p>□ 집합투자업자(A사)가 그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면서 그 집합투자업자의 이해관계인인 신탁업자*(B사)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인 채무증권(X)을 제3자로부터 유통시장에서 취득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84조 위반인지 여부</p> <p>* B사는 A사가 운용하는 전체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의 100분의 30 이상을 보관/관리하고 있는 전담중개업자</p>
회답	<p>□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3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X)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p> <p>○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p>
이유	<p>□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가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함에 있어서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면서,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등 집합투자기구와 이해상충 우려가 없는 일정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p> <p>* ① 이해관계인이 되기 6개월 이전에 체결한 계약에 따른 거래 ② 증권시장 등 불특정다수인이 참여하는 공개시장을 통한 거래 ③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 ④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p> <p>○ 다만, 자본시장법 제85조제8호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4항제7호는 자본시장법 제55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5조에 따른 금지 또는 제한을 회피할 목적으로 하는 행위로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p>

- 이 경우, 자본시장법 제84조제1항에서는 원칙적으로 이해관계인과의 거래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제3자와의 거래행위인 이상 그 거래대상인 채무증권(X)의 인수인 또는 주선인이 이해관계인(B)이라는 점만으로는 동 조항에서 금지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 다만,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제84조가 금지하는 행위를 회피하고자 하는 거래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본시장법 제85조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190327)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는 내용으로 신탁계약을 변경한 경우, 인하기간 종료 후 기존의 보수로 회복하는 것이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른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요하는 보수인상인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제188조제2항에 따르면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가 신탁계약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일정한 경우* 미리 수익자총회의 결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① 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 등이 받는 <u>보수, 그 밖의 수수료의 인상</u> ② 신탁업자의 변경(합병·분할·분할합병,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변경되는 경우를 제외한다) ③ 신탁계약기간의 변경(투자신탁을 설정할 당시에 그 기간변경이 신탁계약서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④ 그 밖에 수익자의 이익과 관련된 중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p> <p>○ 동 조항은 집합투자기구에 관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수익자의 의사를 사전적으로 확인하고 그 의사결정에 따르도록 함으로써 수익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해석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이에 따르면, 집합투자기구의 운용보수를 한시적으로 인하하더라도 운용보수 인하기간 동안 신규 투자자가 해당 집합투자기구에 투자하는 경우 신규 투자자는 인하기간 종료 후 운용보수가 상향되는 점등을 감안할 때, 기존보수 수준으로 운용보수를 상향할 때에는 수익자총회 결의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190387)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출자전환의 발행가액이 정해진 후, 채권금융기관의 결의로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됨 ○ 공동관리절차가 종료된 후 출자전환이 이루어진 경우,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에 해당되어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정한 발행가액으로 출자전환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동관리절차가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의로 종결되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구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절차의 지속 여부는 '채권금융기관협의회'에서 심의·의결하는 것이고, '채권금융기관협의회'의 결정으로 종결되었다면 '증권의 발행 및 공시에 관한 규정' 제5-18조제4항제2호의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의한 공동관리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10)

질의 요지	<p><제목>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시 운용자산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설명의무 등 적용 여부</p> <p>○ 영 제103조제1호에 따른 특정금전신탁계약 체결 시, 신탁재산에 속하는 금전으로 운용하는 자산에 대하여 신탁업자가 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 원칙 등 투자권유 규제를 적용받는지 여부</p>
회답	<p>□ 금융투자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46조에 따른 적합성 원칙,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 제49조에 따른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됩니다. 또한,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제46조의2에 따른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p>
이유	<p>□ 신탁업자의 경우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는 경우, 적합성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가 적용되며, 투자권유를 하지 않고 파생상품등에 해당하는 특정금전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p> <p>○ 특정금전신탁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4조 제6항에 따라 투자자가 신탁재산인 금전의 운용대상 등 운용방법을 지정하는 신탁계약이며, 자본시장법 제109조에 따라 신탁계약의 내용에는 신탁재산의 운용에 의하여 취득할 재산의 내용 등이 포함되어야 합니다.</p> <p>○ 따라서, 신탁업자가 일반투자자에게 특정금전신탁계약의 체결을 권유하거나, 체결하는 경우에는 신탁재산의 운용대상 등에 대하여 적합성 원칙, 설명의무, 부당권유 금지 또는 적정성원칙이 적용됩니다.</p> <p>○ 특히, 개인투자자에게 자본시장법 제47조에 따른 설명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신탁업자는 운용대상 등에 대한 설명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교부하지 않는 경우 금융투자업규정 제4-93조 제29호에 따른 불건전 영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려드립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11)

질의 요지	<p>□ 동일한 자산운용사가 운용하는 수개의 펀드(신탁형 펀드)로부터 주식을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등에 따른 의무공개매수 대상인지 판단하기 위한 매수등의 상대방 수를 산정함에 있어 자산운용사의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여부</p>
회답	<p>□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 자본시장법 제133조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르면, 과거 6개월간 10인 이상의 자로부터 증권시장 밖에서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본인과 특별관계자(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1조)가 보유하게 되는 주식등을 합산한 보유비율이 발행주식등 총수의 5%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공개매수 절차에 의하여 주식등을 취득하여야 합니다.</p> <p>○ 이 때 10인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은 ① 일반 법원칙에 따라 소유권 등의 권리 주체로서 법인격이 있는지 여부와 함께 ②지배권 경쟁의 공정성 확보 및 모든 주주에게 동등한 매도 기회를 부여한다는 공개매수 제도의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의결권 등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p> <p>□ 이에 따르면, 실질적인 펀드 운영방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나, 통상 펀드의 경우, ①법인격 유무 및 ②자본시장법 제184조 등에 따라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고려할 때,</p> <p>○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투자신탁 등 신탁형 펀드는 운용사를 기준으로, 투자회사 등 회사형 펀드는 개별 펀드를 기준으로 상대방 수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16)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시행령 제87조제4항제5호 및 제6호는 집합투자업자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와의 이면계약 등에 따라 그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를 집합투자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하여 금지하고 있음</p> <p>○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 '명령·지시·요청 등을 받아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의 구체적 판단기준은 무엇인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하단의 이유 참조</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4항 제5호 및 제6호에서 '명령·지시·요청 등에 따라 집합투자재산을 운용하는 행위'라 함은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설정·운용·청산 등과 관련한 모든 과정을 포함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 조항은 자산운용사가 아닌 자의 무인가 영업행위 및 판매사의 자기이익 도모 유인을 방지하여 투자자의 권익을 엄격하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원칙적으로 단순협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는 '명령·지시·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p> <p>○ 다만, 이는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부터의 투자대상·운용방법 특정여부, 일반적 수준의 업무협의인지 여부, 이에 대한 입증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p> <p>- 예를 들어,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가 투자대상·운용방법 등을 특정하지 아니하면서 펀드 설정 등을 위한 시장동향, 고객수요 등을 논의하거나, 펀드의 설정·운용 등과 관계없는 일반적 수준의 정보교류행위(펀드 판매동향 등)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로서의 의무를 이행(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 제출대상 여부 확인 등)하기 위한 자료요구·면담행위 등은 명령·지시·요청 등에 해당하는 불건전 영업행위가 아닌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p> <p>- 또한, 동 내용을 입증하기 위해 집합투자업자와 투자자 또는 투자매매·중개업자간 협의내용을 기록 보관하고, 협의 관련 내부통제기준 등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40)

질의 요지	<p>□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권소사업 구성의 경우, 참여지분 비율과 상관없이)가 되어, 사업대상 부동산을 부동산신탁회사의 명의로 매수 및 등기한 후, 이를 직접 개발하는 행위가 자본시장법상 허용되는지 여부</p>
회답	<p>□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해당 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p>
이유	<p>□ 자본시장법 제6조 제9항, 제9조 제24항은 신탁업이란 「신탁법」 제2조의 신탁을 영업으로 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 1은 부동산신탁업자가 수탁할 수 있는 신탁재산을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로 정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자본시장법 제10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5조는 신탁재산과 고유재산의 구분 의무 및 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제한 의무를 두고 있고, 자본시장법 제103조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104조 제7항은 부동산개발신탁의 사업비 수탁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문의하신 사안과 관련하여 부동산신탁회사는 동산, 부동산 및 부동산 관련 권리를 신탁재산으로 수탁받아 수익자의 이익 또는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신탁업무를 수행할 수 있고,</p>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부동산신탁회사가 부동산개발사업의 주체가 되어, 자본시장법에서 정한 신탁재산의 수탁 없이 부동산개발사업의 기초가 되는 부동산을 확보하여 직접 개발하는 행위는 자본시장법상 허용된 신탁업으로 볼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

법령해석 회신문(200143)

질의 요지	<p>□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하여 집합투자재산으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회사채를 매수하는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제2호의 4에서 규정한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에 따라 관계인수인과의 거래도 허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p>
이유	<p>□ 자본시장법 제85조 제2호는 집합투자업자가 자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집합투자재산으로 매수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조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제1항 각 호에 따라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그 예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87조 제1항 제2호의4는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재산으로 집합투자업자 또는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을 매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p>□ 채권시장안정펀드의 하위펀드 운용과 관련한 관계인수인과의 거래의 경우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라고 일의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으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상대방 선정 절차의 합리성·공정성, 거래조건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3자의 입장에서 공정한 가격으로 거래가 이루어지는 등 집합투자업자와 집합투자기구 간 이해상충의 우려가 없는 거래로 평가될 수 있다면 '일반적인 거래조건에 비추어 집합투자기구에 유리한 거래'로서 관계인수인이 인수한 증권의 매수도 허용될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79)

질의 요지	<p>□ A회계법인은 손해보험사 B, C의 회계감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B와 C 공동인수)”을 체결하고자 함</p> <p>* 보험료가 1억원 이상인 것을 전제로 질의</p> <p>① 상기 보험계약이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하여 「공인 회계사법」 시행령 제15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직무제한에 해당되는지 여부</p> <p>② 상기 보험계약이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제2호 가목 또는 다목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 A회계법인이 피감사인인 보험사(B, C)와 전문가배상 책임보험계약을 체결 시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워 공인회 계사법령상 직무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p>
이유	<p>□ 전문가배상 책임보험의 경우 일반적으로 회계법인이 계약 시 연간보험료를 선납하고 재무제표상 선급보험료로 계상하는 점에서 이를 채권 또는 채무 관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p> <p>* 보장성 보험상품에서 보험금 청구권도 장래 보험사고 발생 시 금액이 확정되므로 (계약 당시에는 그 채권 금액을 확정할 수 없음) 이것도 1억원 이상의 채권 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려움</p> <p>※ 관련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공인회계사법 ></p> <p>제33조(직무제한) ①회계법인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재무제표를 감사하거나 증명하는 직무를 행하지 못한다.</p> <p>1. 2. (생략)</p> <p>3. 제1호 및 제2호외에 회계법인이 뚜렷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거나 과거 1년 이내에 그러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는 자로서 <u>대통령령이 정하는 자</u></p> <p>② (생략)</p> <p>< 공인회계사법 시행령 ></p> <p>제15조의2(회계법인의 직무제한) ①법 제3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p> <p>1. (생략)</p> <p>2. <u>회계법인과 1억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제14조제1항제2호 단서의 규정은 회계법인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u></p> </div>

3. (생략)

② (생략)

제14조(직무제한) ①법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라 함은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1. (생략)

2. 공인회계사 또는 그 배우자와 3천만원 이상의 채권 또는 채무관계에 있는 자.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 또는 채무를 제외한다.

가. 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공인회계사의 직무와 직접 관련된 채권

나.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는 금액 한도 이내의 예금·적금 등 채권

다. 표준약관에 따라 구입하거나 정상적인 가격으로 구입한 회원권·시설물이용권 등 채권

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퇴직연금 등 채권

마.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따른 기관으로부터 받은 주택담보대출·예금담보대출 등 통상의 절차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고 성립된 채무

바.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신용카드의 사용에 의한 지급 기일이 2월 이내인 채무 중 연체되지 아니한 채무

사. 감사기간 중 합병·상속 또는 소송 등에 의하여 비자발적으로 발생한 채권 또는 채무

3.~5. (생략)

②~⑤ (생략)

법령해석 회신문(200220)

질의 요지	<p>□ 손자펀드가 자펀드에 10% 이상 투자하고, 해당 자펀드가 모펀드에 10% 이상 투자하는 등 복층(3~4층 이상)의 수직 투자구조 하에서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에 따른 사모펀드 투자자 수 합산 규제가 적용되는지 여부</p>
회답	<p>□ 복층구조(3~4층 이상)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상위펀드의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p>
이유	<p>□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4조제2항 후단은 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수를 산출할 때 다른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 다른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의 수를 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동 조항은 실질적인 투자자 수가 50인 이상이어서 공모펀드로 설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모펀드의 외관을 이용하여 공모규제를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복층구조(3~4층 이상)로서 하위 펀드가 상위 펀드에 각각 상위펀드의 집합투자증권 발행총수의 10% 이상씩 투자한 경우에는, 상위펀드 투자자 수 계산시 모든 하위펀드의 투자자 수를 합산하여야 합니다. 즉, 아래 [그림1]의 구조인 경우 D펀드의 투자자 수 산정시, A펀드부터 C펀드까지의 투자자 수를 모두 합산하여야 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dashed gray; padding: 10px; margin: 10px 0;"> <p>[그림1] 복층 투자구조 예시</p> <pre> graph LR A[A펀드] -- "B펀드 NAV의 10%" --> B[B펀드] B -- "C펀드 NAV의 10%" --> C[C펀드] C -- "D펀드 NAV의 10%" --> D[D펀드] </pre> </div>

법령해석 회신문(200225)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것도 전담중개업자만 가능한지 여부 ○ 레버리지 목적의 TRS는 신용공여가 아닌 장외파생상품에 해당되는데도,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수행가능한지 여부
회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모펀드에 대해 신용공여 또는 수탁업무만 단독으로 제공하는 행위도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하고, ○ 사모펀드에 대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하는 행위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만 가능합니다.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담중개업무는 사모펀드 등을 대상으로 증권대차, 신용공여, 펀드재산의 보관·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업무로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사모펀드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리스크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입니다. ○ 사모펀드에 대한 신용공여 및 재산의 보관·관리 업무는 전담중개업무 중 핵심 업무에 해당하고, 레버리지 목적의 TRS도 경제적 실질이 신용공여와 유사하므로 해당 사모펀드와 전담중개계약을 체결한 종합금융투자사업자가 제공하여야 합니다. ○ 다만, 기존에 전담중개계약 없이 레버리지 목적의 TRS를 제공한 경우에 대해서는 업계와의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계도 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28)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당사는 회사 분할로 인하여 2020년 1월 분할 신설된 상장법인*임 * 신설 당시 자산 1조원 이상</p> <p><input type="checkbox"/>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에 따라 당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의무가 2020년부터 적용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2020년에 분할 신설된 주권상장법인은 외부감사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전 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년의 경우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 용되지 않습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외부감사법 제8조제6항 단서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는 동 법 부칙 제3조에 따라 상장법인의 전년말 자산총액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적용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2020년에 분할 신설된 법인은 전년말 기준 자산총액이 없어 2020년도 에는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가 적용되지 않으며,</p> <p style="padding-left: 20px;">○ 2021년도는 2020년말 자산 총액기준으로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의무 대 상여부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관련규정</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p>< 외부감사법 ></p> <p>제8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① ~ ⑤ 생략</p> <p>⑥ 감사인은 회계감사를 실시할 때 해당 회사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다만, 주권상장법인의 감사인은 이 조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했는지 여부 및 제 4항에 따른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에 관한 보고내용을 감사하여야 한다.</p> <p>제3조(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6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감사 인의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는 감사보고서 작성일 기준 <u>전년 말 자산총액 2조원 이 상의 주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19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의 주 권상장법인에 대해서는 2020년 감사보고서부터,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의 주권상장 법인에 대해서는 2022년 감사보고서부터 적용하고, 2023년 감사보고서부터는 전체 주권상장법인에 대하여 적용한다.</u></p> </div>

법령해석 회신문(200296)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부동산 분양사업을 하는 회사형 사모집합투자기구의 경우,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여 부동산을 신탁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자본시장법 제184조제3항에 따르면 집합투자업자 또는 투자회사등은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신탁업자에게 위탁하여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문의하신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사형 집합투자기구가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업자와 분양관리신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그 집합투자재산인 부동산의 소유권이 해당 신탁업자에게 이전되는 바, <input type="checkbox"/> 집합투자재산의 보관·관리업무를 위탁하도록 한 자본시장법 제184조 제3항을 위반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86)

질의 요지	<p>□ C사는 A사(코넥스 상장) 주식 6.25%를 보유하여 대량보유상황보고(5%)를 하였는데, 이후 A사가 SPAC합병하여 코스닥으로 이전 상장(B사)됨으로써 최종적으로 SPAC 합병한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 4.76%를 보유하게 되었음</p> <p>○ 이 경우 A사 주식의 변동과 관련하여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5% 공시 후 1% 이상 변동에 따른 공시)가 있는 지 여부, 보고의무가 있다면 보고해야하는 시점 및 보고대상 회사(A사 인지, 합병 후 존속법인인 B사인지)에 대하여 질의</p>
회답	<p>□ 합병 후 코스닥 상장법인 B의 주식을 취득한 C사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사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날(합병등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p> <p>○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합병으로 인하여 A법인이 소멸하고,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식 4.75%를 C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p>
이유	<p>□ 합병 후 존속법인인 코스닥 상장 B사의 주식을 취득한 A사의 주주가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되는 경우 합병을 한 날(합병등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본시장법 §147, §173, 동법 시행령 §200).</p> <p>* 주식등의 대량보유자가 주식등의 보유상황이나 변동내용을 보고하는 경우에 그 보고기준일은 흡수합병의 경우 합병을 한날(합병등기를 해야 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합병을 한 날”은 합병등기일을 의미), 신설합병인 경우에는 그 상장일임</p> <p>□ 5%보고의 보고의무자는 주권상장법인의 주식을 대량으로 보유한 자(자본시장법 §147)를 의미하므로, 합병 이후 소멸되는 법인이 아닌 존속하는 법인의 주식을 기준으로 대량으로 보유한 자가 보고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p> <p>□ 질의하신 사안은 합병으로 인하여 A법인이 소멸하고, 존속법인인 B법인의 주식 4.75%를 C사가 취득하게 되었다는 취지인 바, ○ 특별관계자와 합산하여 B법인의 주식등을 5%이상 보유하게 된 것이 아니라면 B법인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p>

6

금융혁신



법령해석 회신문(200268)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2020년 8월 27일 개정 예정인 「P2P대출 가이드라인」 시행 시 은행통합형 P2P대출의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2020년 8월 27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 후 금융위원회에 등록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가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으로 운영시 연계대출채권의 파산절연이 유효한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 따르면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대출 방식’의 운영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본건 P2P업체는 「은행법」에 따라 인가를 받은 은행(이하 “협약은행”)로 하여금 대출(이하 “P2P대출”)을 차입자에게 실행하게 하고, 협약은행은 본건 P2P업체가 모집한 투자자로부터 현금을 P2P대출의 담보로서 수취합니다. (따라서 P2P대출의 채무불이행 발생 시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 협약은행은 P2P대출의 금리는 0%로 하며, 차입자들은 실제 P2P대출에 대한 신용위험을 부담하는 투자자에게 담보이용수수료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하여 투자자 입장에서는 투자수익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하 “은행통합형 P2P 대출” 방식)</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P2P대출 가이드라인」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등에서 규정한 내용과 동일하게 규정한 것임을 안내드립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해당 차입자에게 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또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령」 제15조제1항제5호에 따르면 ‘연계대출 계약의 심사·승인 및 계약의 체결·해지 업무’를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필수적인 업무로서 제삼자에게 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아울러,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제26조제3항에 따르면,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된 투자금등을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p> <p>⇒따라서, 귀하가 설명한 은행통합형 P2P방식의 운영은 불가합니다.</p>

전자금융

법령해석 회신문(190351)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가 간편송금업자 등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해 피해금을 송금·이체한 경우,</p> <p>○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선불전자금융업자가 해당 피해자금의 송금·이체내역(거래내역)을 피해자에게 확인(이체확인증 등 발급)하여 주고,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는 피해자가 제공한 전자금융업자의 거래내역 확인정보(이체확인증 등)를 통해 자금의 송금·이체내역을 확인하여 주는 경우라면,</p> <p>* 전자금융업자의 약관 또는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요청</p> <p>○ 피해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금융회사의 계좌가 사기이용계좌(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iv)에 해당하는지 및 동 송금·이체액이 피해금(통신사기피해환급법 §2 v)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 않으나,</p> <p>①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p> <p>② 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p> <p>③ 피해자가 제출한 ②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p> <p>*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p> <p>○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p> <p>*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 가상계좌 → 실물계좌(B)' 로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p> <p>○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상 사기이용계좌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사기이용계좌”란 ‘피해자(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의 자금이 송금·이체된 계좌 및 해당 계좌로부터 자금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를 말하며(「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제4호), “피해금”이란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하여 피해자의 계좌에서 사기이용계좌로 송금·이체된 금전’을 말합니다.(동법 제2조제5호)</p> <p>○ 이러한 사기이용계좌로의 피해금의 ‘송금·이체’와 관련하여,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별도로 정의하거나 특정 법을 준용토록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일반적인 송금·이체의 개념*에 따라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p>

- * 통상 '송금(送金) : 돈을 부쳐 보냄, 이체(移替) : 어떤 계좌의 자금을 다른 계좌로 옮김' 으로 정의
- 질의하신 취지가 명확하지는 않으나, ①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이 전자금융업자의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 로부터 선불전자금융업자의 법인계좌를 거쳐 금융회사 계좌(B)로 입금*되었고,
- ②약관 또는 관련 법령 등에 근거한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해당 전자금융업자가 ①의 거래내역을 확인하여 주며,
- ③피해자가 제출한 ②에 따른 거래내역 확인증 등을 통해 금융회사가 ①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사실을 확인한 경우라면,
- * 법인계좌로부터 직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또는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환급 절차를 통해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모두 포함
- 이러한 경우 실질적으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자의 자금이 피해자의 금융회사 계좌(A)로부터 금융회사 계좌(B)로 피해금이 송금 또는 이체*된 사실이 확인된 것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 * (관련 법령해석) 보이스피싱을 통해 '실물계좌(A) → 가상계좌 → 실물계좌(B)' 로 간접적으로 입금된 경우, 해당 입금계좌(B)를 사기이용계좌로 본 바 있음(법령해석 170017 회신)
- 따라서, 해당 금융회사 계좌(B)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사기이용계좌이며, 동 입금액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금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26)

질의 요지	<p>대면 채널을 통한 보험계약 체결 과정에서 보험계약자가 모바일 화면에 접속하여 본인의 심사서류를 보험회사에 직접 제출하고, 이후 보험회사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계약이 체결되는 경우,</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보험계약자가 심사서류를 전자적인 방법으로 제출하는 과정이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만약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생년월일과 성별을 입력하는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하는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에 따른 안전성, 보안성, 이용편의성 등을 충분히 고려한 거래인증수단으로 인정 가능한지 여부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p> <p>○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u>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u>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과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보험심사자가 고객이 제출한 심사서류를 심사하여 인수여부를 결정하는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는 고객이 모바일을 통해 보험심사서류를 제출하면 보험심사자가 제출된 서류를 심사하여 보험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는 방식의 서비스가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란 ①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②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p> <p>○ 이러한 ‘자동화된 방식’은 <u>거래의 완결과정에서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하는 경우에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u>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서 참조)</p>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귀사의 고객이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험계약 체결을 위한 심사서류를 제출한다 하더라도 귀사의 보험심사자가 인수 여부를 심사하는 등 인위적인 판단이 개입된다면 이는 ‘자동화된 방식’으로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이는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28)

질의 요지	<p>1. 당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ARS 업무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의 '접근매체'에 해당하는지</p> <p>2. 통신용 비밀번호를 '실명확인 절차'가 아닌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발급하는 것이 가능한지</p> <p>당사는 ARS 사용을 등록하는 경우, 계좌원장 비밀번호와 별개로 통신용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당사가 고객의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경우, 이를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도 있다고 보아, '실명확인 절차(고객이 직접 내방하거나 비대면 실명확인)'를 거치고 있습니다.</p> <p>그러나, 당사의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및 「전자금융감독규정」상의 접근매체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따라서 통신용 비밀번호 사용을 등록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실명확인 절차'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법령해석을 요청 드립니다.</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의 질의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p> <p style="margin-left: 20p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다목에 따른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한편, 해당 통신용 비밀번호가 접근매체에 해당하면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의미합니다.</p> <p>* 제2조 제10호 "접근매체"라 함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가.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4호의 전자서명생성정보 및 같은 조제7호의 인증서 다.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에 등록된 이용자번호 라. 이용자의 생체정보 마. 가목 또는 나목의 수단이나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p>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은 명확히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고객에게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가 본인확인을 위한 추가적인 수단으로 사용되고, 귀사가 발급한 통신용 비밀번호를 고객이 지속적으로 입력하도록 하는 방식이라면,
 - 통신용 비밀번호는 '거래지시를 하는 과정에 있어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거나 또는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신용 비밀번호는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한편, 귀사가 사용하는 통신용 비밀번호가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귀사가 통신용 비밀번호를 사용 등록하는 것은 접근매체의 발급에 해당하여 반드시 실명확인 후 발급·교부하여야 하며, 기타 다양한 인증수단을 통한 본인확인 후 발급은 허용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30)

질의 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 중 “갖출 것”에 대한 적용범위 질의 - 상기 조항에 따라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및 각종 프로그램을 타 사업자로부터 빌려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이용하는 범위에 한해서만 관련 전산기기 및 프로그램에 대한 위탁 운영이 가능하고, 그 외에는 전자금융업자의 자산으로 보유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며,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및 위탁 운영 등 다양한 방법이 가능합니다. <p><input type="checkbox"/> 다만,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에는 <u>관련 법령상 규정</u>을 준수해야 합니다. ※ 관련 법령상 규정 : ①「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 기준 등의 보고), ②「전자금융거래법」§40, 「전자금융감독규정」§60 등</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수행을 위해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려는 자는 같은 법 제31조의 요건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이용자의 보호가 가능하고 행하고자 하는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0조에서는 이를 구체화하여 전자금융업을 원활히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산기기, 각종 프로그램 등을 갖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이 경우 ‘갖추다’는 ‘있어야 할 것을 가지거나 차리다’라는 의미로서 전산설비 등을 직접 소유하거나 보유하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참고) 「보험업법」의 경우 허가의 요건으로 제6조에서 전문 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物的) 시설을 충분히 갖추도록 규정하고, 「보험업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에서 전산설비의 개발·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업무, 정보처리 업무를 외부에 위탁하는 경우에도 그 업무와 관련된 전문 인력, 물적 시설을 갖춘 것으로 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법 연혁적 측면에서 볼 때에도 ‘19.1월, 클라우드 이용 확대에 따른 조문 정비를 추진하면서 허가등록의 물적 시설 세부요건 중 ‘보유’의 용어를 개별 금융업법상 물적설비 요건과 동일하게 ‘갖출 것’으로 개정(「전자금융감독규정」 §50①Ⅱ,Ⅳ)한 바 있습니다.

○ 따라서,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기기 등을 갖추는 방법에는 임차, 사용대차, 시설대여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고,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주사·계열사 등이 보유한 설비를 이용하여 위탁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 그런데, 이러한 방법으로 전산설비를 위탁 활용하는 경우 금융회사 등이 자신의 정보처리 업무를 제3자로 하여금 계속적으로 처리하게 되므로,

○ '정보처리의 위탁'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금융회사의 정보처리 업무 위탁에 관한 규정」(업무위수탁 운영기준 등의 보고)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또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와 관련하여 금융회사 등과 제휴, 위탁 또는 외부주문에 관한 계약을 체결, 전산설비 위탁 운영 등을 수행하는 상대방은

○ 전자금융업무와 관련된 정보처리시스템을 해당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를 위하여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전자금융보조업자에 해당(「전자금융거래법」§2V, 「전자금융감독규정」§3Ⅲ) 합니다.

- 이 경우 금융회사 등은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령상 외부주문 등에 관한 기준 등(「전자금융거래법」§40, 「전자금융감독규정」§60 등)을 준수하여야 하며,

- 외부주문 등에 대한 감독·검사를 위해 전자금융보조업자는 계약서, 계약서 부속자료 및 그 밖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자료 등의 자료제출 의무를 부담(「전자금융거래법」 §40, 「전자금융감독규정」§61)합니다.

□ 한편,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겸영하는 등 전자금융업 이외의 다른 금융 관련 업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다른 금융업 관련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예) 전자금융업자가 VAN사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상 신용카드 등 부가통신업의 등록기준 등을 개별 검토하여 준수 필요(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5의2, 별표1의2)

법령해석 회신문(200031)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 관리자(영업직원)가 전용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과 의사소통을 하고, 고객으로부터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의 ‘이용자가 금융회사 종사자와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전자금융업무를 이용하는 거래’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p> <p><input type="checkbox"/> 고객이 ① 휴대폰 단말기에 전용메신저를 다운 받아 서비스 이용 신청 시 본인인증을 하고 ② 본인확인 후 관리자와 주식매매에 관하여 의사소통을 한 후 주식주문 요청서에 동의 의사표시를 하고 계좌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경우,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82조상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의 질의만으로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의 영업직원이 전용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이는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본인확인절차 준수 여부는 한국거래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해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p> <p>○ 귀사의 영업직원이 주식매매 주문수탁의 의사표시를 받기 위해 고객과 직접 대면하지는 아니하나, 전용 메신저를 이용하여 고객의 주문수탁 의사표시를 받아 별도의 매매주문 시스템에 주문을 입력하는 행위를 하는 이상, 이는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로 볼 수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상 본인확인절차 준수 여부는 한국거래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36)

질의 요지	<p>「전자금융거래법」상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와 계약을 맺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 역시 위탁한 때,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의 요건을 갖춘 경우 금융회사의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를 재위탁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특히,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컴퓨팅을 이용할 때, 위 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요건 중 위탁회사의 전산실의 범위에 클라우드 전산센터가 포함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 단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정보보호와 관련된 업무의 재위탁이 가능합니다.</p> <p>○ 한편, 금융회사 등이 제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p> <p>-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요건과 관련한 위탁회사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의 범위에는 제3자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40조 제6항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의 재위탁 제한규정은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안전한 처리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p> <p>○ 「전자금융거래법」에서의 정보보호 관련 업무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를 위한 업무로서(「전자금융거래법」 §21의2④ 등), 방화벽 운용, 시스템 모니터링 등 보안 인프라 운영과 취약점 분석평가, IT내부통제 관리 등의 업무를 포괄하며,</p> <p>- 정보의 외부유출 방지 등을 위해 금융회사 등의 정보보호최고책임자(CISO)가 통솔해야 하는 업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위탁을 제한하되, 단서규정을 두어 일정한 조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재위탁을 허용하였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아울러,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각 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목적 달성을 위해 다음과 같이 재위탁의 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으므로, 해당 기준을 준수하는 경우에는 재위탁이 가능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60④ I, II).</p>

- I) 재수탁업자가 재위탁된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금융거래 정보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의 개별적 지시에 따라야 하고,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는 변경된 정보가 지시 내용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
- ii) 위탁업무와 관련된 이용자의 금융거래정보는 “위탁회사의 전산실” 내에 둘 것 (다만, 재수탁업자가 이용자의 이용자 정보를 어떠한 경우에도 알지 못하도록 위탁회사 또는 원수탁업자가 금융거래정보를 처리하여 제공한 경우에는 위탁회사의 관리·통제 하에 재수탁회사 등 제3의 장소로 이전 가능)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60조 제4항 제2호의 위탁회사의 “전산실”이라 함은 전산장비, 통신 및 보안장비, 전산자료 보관 및 출력장비가 설치된 장소를 의미하고(「전자금융감독규정」 §21),
- 금융회사 등이 제3자가 제공하는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50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허가·등록의 요건으로서 전산설비·기기 등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 위탁회사인 금융회사 등의 전산실의 범위에는 제3자인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제공자의 전산센터도 포함된다고 판단됩니다.
- 다만,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가 위탁받은 업무를 재위탁하는 경우에는 금융회사 등과 체결된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위·수탁 계약)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마련된 금융회사 등의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을 준수하여야 합니다(금융보안원, 금융분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가이드 64면 등 참조).
- 또한, 재위탁에 따른 재수탁자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전자금융보조업자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법 제40조 및 감독규정 제60조에 따른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1)

질의 요지	<p>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외의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금융투자협회가 K-OTC 호가중개시스템 및 관련 업무용 단말기에 대한 업무망 분리를 이미 모두 완료한 상태에서 전자금융업무와 무관한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이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것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 하는 금융회사에 해당합니다(법 §1, 시행령 §2).</p> <p>○ 한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 등에 따른 망분리 의무는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고 있는 바, 동 규정의 의미를 밝히는 경우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종합 고려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p> <p>○ 동 규정은 대규모 금융전산사고 등을 배경으로 도입되었으며, 금융회사 등의 내부망·시스템의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고,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하려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습니다.</p> <p>① 따라서, 금융회사나 전자금융업자가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할 뿐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는 경우로서,</p> <p>②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 수행을 위한 정보처리시스템이 외부망과 분리·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①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p> <p>-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제1항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금융투자협회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이 적용되지 않는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면서,</p>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이하 ‘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등에 따른 자율규제 업무 등을 주된 업무로 수행하고, 전자금융업무로서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운영, 자본시장법 286조 제1항 제5호) 등을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질의하신 사실관계 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부수적으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하면,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성격이 전자금융업무라고 보기는 어려운 바,
-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시스템과 K-OTC운영 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 시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유

1.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의미

- 「전자금융거래법」은 제2조에서 수범 주체인 금융회사 등의 범위를 정하고 제3조 및 시행령 제5조에서 전자금융업무를 하지 않는 특정 금융회사 등에 한해 안전성 확보의무 등 일부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을 뿐이므로,
- 전자금융업무(법 제2조 제1호 전단)를 수행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IT관련 사항을 포함한 금융회사 등의 업무 전반에는 법 제21조 제2항의 안전성 확보의무가 적용됩니다.
-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은 법 제21조 제2항을 근거로 금융회사 등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구체화한 것인바,
- 동 규정상의 망분리 의무는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의 전자금융거래 시스템(규정 제15조 제1항 제5호),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에도 모두 적용(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된다고 할 것입니다.
- 이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는 망분리 대상으로서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시스템”의 개념이나 범위를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 그런데, 동 조항을 문언적 의미만을 기초로 예외 없이 해석·적용할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사업 부문의 비중이 높은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은 전자금융업의 수행과 무관한 정보통신 서비스 사업 부문에까지 망분리의 적용 범위가 제한없이 확장되는 불합리가 발생합니다.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법해석의 목표는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하므로, 동 조항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도 입법취지·목적, 제·개정 연혁 등을 고려해 구체적 타당성을 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판결)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앞서 본 법해석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는 ‘13. 3. 20. 발생한 금융회사 등의 대규모 전산망 마비 사고*를 배경으로 ‘공공부문’의 망분리 제도를 ‘금융분야’에 도입한 것이 그 계기가 되었습니다.

* 농협·신한·제주은행 및 KBS·MBC·YTN의 전산망이 악성코드에 감염, 상당수의 PC가 마비, 정보유출·자료파괴 사고가 발생

○ ‘13년에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를 의무화한 이후, ‘15년에는 업무상 대외 기관과 연결이 불가피한 경우 등에 있어 정보유출 방지 대책 등을 갖출 것을 바탕으로 망분리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금융회사 등의 망분리 부담을 일부 경감한 바 있습니다.

○ 이러한 입법배경·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동 규정은 금융회사 등의 내부망·시스템의 악성코드 유입 등을 방지하고, 외부로의 정보유출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을 확보(법 §21①, ②)하는 것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 이는 금융회사 등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법 제1조 내지 제3조).

□ 위와 같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문언의 통상적 의미, 입법취지와 목적, 제·개정 연혁 등에 비추어 본다면,

① 내부 업무용시스템에서 처리되는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전자금융업무의 수행과 관련이 없고,

② 금융회사 등의 전자금융업무와 관련한 정보처리시스템은 외부망과 분리·차단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위 ①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정보처리시스템과도 서로 연계되지 않는 등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됨으로써 전자금융거래의 신뢰성·안전성 확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라면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 업무용시스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의 적용과 관련한 금융투자협회 업무의 특수성

□ 원칙적으로 금융투자협회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에 따른 안전성 확보 조치를 해야하는 의무대상인 금융회사 등에 해당합니다(법 제1조).

○ 그런데, 금융투자협회는 기본적으로 은행연합회 등과 같은 이익단체적 성격을 가지면서, 자본시장법 제286조에 근거하여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쟁의 자율조정, 자율규제업무(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2호), 연수업무(자본시장법 제286조 제1항 제8호) 등 고유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 또한, 특별하게 주권의 장외매매에 관한 업무(K-OTC 운영, (자본시장법 제286 조 제1항 제5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일반적으로 은행 등 금융회사는 정보통신 사업을 영위하면서 전자금융업무를 부수적으로 수행하는 일부 전자금융업자 등과는 달리

○ 그 업무의 본질적 성격이 금융업이나 전자금융업의 수행에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①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를 상정하기 어렵다 하겠으나, 금융투자협회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업무가 법정화된 단체로서 그 주된 업무가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일반 금융회사와는 다른 특징이 있습니다.

□ 결론적으로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하게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부수적으로 수행 중인 K-OTC운영 업무 등을 제외한,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의 본질적 성격은 '전자금융업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 따라서,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시스템과 K-OTC 운영시스템이 서로 연계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분리 구성·운영*되는 등으로 인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경우라면,

* K-OTC 업무를 영위하기 위한 전산시스템("K-OTC 호가중개시스템")과 기타 내부 정보처리시스템 간의 망분리 및 K-OTC 호가중개시스템과 외부통신망간의 물리적 망분리를 완료하는 등 해당 시스템을 운영하는 임직원부서에 대한 망분리 체계 유지 등

○ 전자금융업무가 아닌 금융투자협회의 주된 업무를 처리하는 내부업무용 시스템에 대하여까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 제3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 그렇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투자협회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6)

질의 요지	<p>「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의 “같은 번호”의 범위에 과거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가 포함되는지 여부</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당행은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과거에 사용했던 모든 비밀번호를 재사용하지 못하게 방지하는 장치를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고 있음 2.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이용자에게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밀번호 변경 시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을 준수하도록 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3. 당행은 해당 규정의 “같은 번호”를 “직전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로 한정하여, 이용자가 계좌비밀번호 변경 시 과거에 사용했던 비밀번호라도 직전에 사용되지 않았다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항을 정보처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을 고려중에 있음
회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면서, 각 호에서 금융회사 등이 갖추어야 할 이용자 보호제도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아울러 규정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호에서는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번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규정은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입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35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는 경우(「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제도 등 자체 환경에 맞추어 안전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으로 재사용이 금지되는 “같은 번호”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는 이용자의 금융회사 등에 대한 신임관계에 기반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의 위임(「민법」 제681조) 계약적 성격에 근거하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1항에서 이용자 정보 관리 등을 비롯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고 있습니다. ○ 한편, 제2항에서는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안전성 확보의무를 부과함으로써 금융보안(Cyber security)을 강화하도록 하면서,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도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에 따른 선관주의 및 안전성 확보 의무를 구체화 한 것으로 전자금융거래의 안전한 수행을 위해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 유의사항을 공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아울러, 각 호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갖추어야 할 이용자 보호제도 및 비밀번호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등은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비밀번호 변경이 가능하도록 정보처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용자가 비밀번호를 변경할 경우 같은 번호를 재사용하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5조 제4항).
- 이 경우, 비밀번호의 재사용 금지와 관련하여 “같은 번호”의 범위를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동 규정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용자가 안전한 비밀번호를 설정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3조, 제35조 등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체 비밀번호 관리보호 체계, 이용자 보호제도 등을 고려하여 재사용이 금지되는 “같은 번호”의 범위를 정함으로써,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합니다.
- 따라서, 금융회사 등이 이용자 비밀번호 관리와 관련한 체계를 갖추고, 안전한 방법으로 판단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한 경우라면 직전 비밀번호에 대하여 재사용을 금지하는 관리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97)

질의 요지	<p>API를 통하여 당행과 (주)레이니스트(뱅크샐러드 앱 및 스크래핑 기술을 이용하여 자산 관리서비스 제공 및 금융상품 소개 등을 하고 있는 핀테크 업체로서 추후 본인신용정보관리업 허가를 목표로 하는 업체) 사이에 금융거래정보를 송수신함에 있어, 은행이 (주)레이니스트의 고객에 부여하는 보안토큰이 접근매체인지 여부</p> <p>상기 보안토큰의 작동 방법과 순서는 다음과 같이 구상되고 있습니다.</p> <p>① (주)레이니스트의 고객이 (주)레이니스트의 앱인 뱅크샐러드를 통해 은행에 있는 자기 정보를 제공받고자 하는 경우, 뱅크샐러드 앱이 은행 API를 호출하며, 은행이 휴대폰 본인확인과 계좌번호 및 계좌비밀번호 확인 등의 절차를 통해 고객 본인확인을 거친 후 고객으로부터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획득하고, 고객에게 보안토큰을 발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p> <p>② 발급되는 보안토큰은 (주)레이니스트의 뱅크샐러드 서버에 보관되며, 고객은 보안토큰을 발급받으면서, 보안토큰의 역할과 유효기간(3개월 이내) 및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의 위험성 등을 고지 받습니다.</p> <p>③ 고객이 뱅크샐러드 앱에서 은행에 보관된 자기정보를 요청하였을 시점에 보안토큰이 은행에 전자적 방법으로 함께 전송되며, 은행은 보안토큰의 유효성 등을 확인하고 (주)레이니스트에 해당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제공합니다.</p> <p>- 상술한 보안토큰의 구현 방식이 은행의 은행 고객에 대한 접근매체 발급행위가 아니라는 점에 관하여 법령해석 또는 비조치의견을 요청</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레이니스트에 오픈 API(Application Program Interface)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큰을 발급하면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귀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주)레이니스트 등 제3자에게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3자가 귀사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따라서, 귀사가 (주)레이니스트의 고객에게 발급(다만, (주)레이니스트의 서버에 보관하여 관리)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주)레이니스트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주)레이니스트에 단순 제공하기 위해 (주)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안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주)레이니스트에 대해 검증 등의 목적으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보안토큰을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이유

-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는 고객의 요구에 따라 (주)레이니스트에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금융거래정보를 안전하게 제공하기 위한 수단으로 보안토큰을 발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 귀사가 발급하려는 보안토큰은 정보주체의 금융거래정보를 (주)레이니스트 등 제3자에게 API를 통해 비대면으로 제공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의 하나로서, 제3자가 귀사의 API를 이용할 수 있는 자인지를 검증하고, 귀사가 보유한 금융거래정보 등에 접근하기 위한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로만 이용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란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 *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보안토큰이 귀사와 고객 간, 귀사와 (주)레이니스트간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것이 아닌 귀사가 보유한 고객의 금융거래정보를 (주)레이니스트에 단순 제공하기 위해 (주)레이니스트에 보관·관리되는 것이라면, (주)레이니스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이용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보안토큰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해 사용되는 접근매체로 보기 어렵습니다.
 - * 전자금융거래를 위하여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와 체결한 계약(이하 “전자금융거래계약”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를 이용하는 자를 말한다.
- 다만, 귀사가 보안토큰을 API를 이용하는 (주)레이니스트를 검증 등의 목적이 아니라 고객에게 직접 발급하고, 고객이 귀사가 보유하고 있는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할 때 고객으로부터 보안토큰을 제공받아 검증하는 경우에는 고객이 보안토큰을 지배적으로 관리하며 보안토큰을 통해 사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13)

질의 요지	<p>「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 단말기 보호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단말기란,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이 가능한 단말기(컴퓨터 등)를 의미한 것인지 아니면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않더라도 업무 목적으로 사용하는 컴퓨터는 모두 단말기에 해당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감독규정」은 제12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함으로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변경,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이에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접속이 가능한 전자적 장치(개인용, 업무용 컴퓨터 포함) 등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부통신망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은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하며, 동 규정이 적용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현재 「전자금융감독규정」에서는 “단말기”의 개념에 대해서 따로 정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다만, “단말기”의 사전적 의미는 중앙컴퓨터와 통신망으로 연결되어 자료를 입력하거나, 출력하는 장치를 의미하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규정은 제12조에서 금융회사 등으로 하여금 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는 단말기를 제한함으로써, - 비인가자에 의한 정보 유출 및 악성코드 감염, 프로그램 변경, 불법 거래 등을 방지할 목적으로 단말기 보호대책을 수립·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단말기”란 원칙적으로 내부통신망에 접속하거나, 접속 가능한 전자적 장치(개인용, 업무용 컴퓨터 포함) 등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결론적으로 내부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하지 못하도록 통제된 컴퓨터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2조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일시적으로라도 내부통신망, 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 가능성이 있는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해당 컴퓨터 등을 통한 정보유출, 악성코드 감염 등이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단말기에 해당하며, 동 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외주개발을 위해 투입된 외주직원이 사용하는 단말기에도 동 규정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19)

질의 요지	<p>'음식점업' 등을 영위하는 오픈마켓 이용자가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로부터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하여 오픈마켓이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는 경우, 오픈마켓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개별 상품의 종류 구분과 관계없이 해당 입점업체가 전자상거래 방식을 이용하여 도매 형태로 상품을 판매하는 이상,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도매 및 상품 중개업' 1개 업종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p> <p>당사 오픈마켓에는 신선식품, 가공식품, 식자재, 일회용 포장 용기 등을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 도매 형태로 판매하는 도매업체가 입점할 예정이며, 당사 회원인 사업자는 오픈마켓 상에서 당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을 사용하여 입점업체의 상품을 구입하고 그 대가를 지급할 예정임. 당사는 (i) 생산자, 도매업자 등으로부터 구입한 상품을 당사 회원인 사업자에게 재판매하는 도매업체만을 오픈마켓에 입점시키거나, (ii) 입점업체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 이외에 '식료품 제조업' (즉, 식료품을 제3자로부터 구입하여 판매(도매)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는 업) 등을 함께 영위하는 경우, 입점업체와의 입점 계약 등을 통해 입점업체가 직접 제조한 상품을 제외한 도매 상품만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귀사가 질의한 내용만으로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이라면,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명확하게 알기 어려우나, 귀사가 발행한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귀사의 오픈마켓 이용자가 '도매 및 상품 중개업'에 해당하는 재화 및 용역의 구입에만 이용되는 경우,</p> <p>○ 상기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p>

-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4호에 따른 “선불전자지급수단”은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범위가 2개 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상의 업종) 이상인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통계청장 고시를 따르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사가 발행하는 전자적 지급수단으로 구입할 수 있는 재화 및 용역의 범위가 한국표준산업분류 중분류상의 1개 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관 부처인 통계청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147)

질의 요지	<p>당행에서는 일정 금액 이하는 통장비밀번호 만으로 이체가 가능한 간편이체 서비스를 구상중입니다. 이에 통장비밀번호가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 된 접근매체로 볼 수 있는지 질의드립니다.</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p> <p>○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라, ‘접근매체’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를 말합니다. 이러한 수단 또는 정보로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 ‘전자식 카드 및 이에 준하는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데 필요한 비밀번호’ 등이 있습니다.</p> <p>○ 귀사가 발급하는 통장 비밀번호는 해당 통장의 전자적 정보를 사용하는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자금이체 등)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한편, 해약환급금 입금용 통장 등 단순 입출금을 위해 발급되는 통장 및 통장비밀번호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6조 제2항 및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4조 제3호에 따라,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접근매체를 발급하기 위해 이용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본인임을 확인(실명확인)한 후에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따라서, 귀사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 제10호에 따른 ‘접근매체’로서 통장 비밀번호를 이용자에게 발급하는 경우 이용자의 실명확인 후 교부하여야 합니다.</p> <p>○ 이 경우, 해당 통장 비밀번호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래지시에 필요한 실명확인된 접근매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95)

질의 요지	<p>「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금융회사가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시 본인확인의 방법으로 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를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p> <p>금융회사의 기등록고객의 경우 본인확인 방법으로써 핸드폰을 이용한 확인방식을 사설인증 수단인 “PASS 인증” 또는 “카카오페이” 를 통한 본인확인이 확인의 방법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을 구합니다.(이러한 인증방법은 회사에 기 등록된 본인 명의 휴대폰 번호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을 전제조건으로 합니다.)</p>
회답	<p>□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 근거하여 고객(이용자)이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 시 이용자의 본인확인 조치로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에 따라,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p> <p>○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에서는 “금융회사는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를 위하여 이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대출신청, 가입한 저축성 예금·적금·부금 등의 금융상품을 해지하는 경우 등)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임을 확인하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으며,</p> <p>○ 동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제1호에서는 “금융회사에 등록된 이용자의 전화(휴대전화를 포함한다)를 이용하는 방법”을 하나의 예시로 들고 있고, 이를 위한 구체적인 인증수단은 열거하지 않고 있습니다.</p> <p>○ 이러한 취지는, 금융회사가 다른 법령상의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에 더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시행령」 제2조의3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고객 본인이 실제로 저축성 예금 등의 해지를 하였는지 여부를 충실하게 점검하도록 하고자 하는 한편,</p> <p>- 특정한 인증수단의 열거 없이 금융회사가 자기 책임 하에 안전한 본인확인 수단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p>

- 그러므로,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2조의4 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조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귀사에 기 등록된 고객의 본인명의 전화번호를 통해 본인확인조치를 하는 경우, 구체적인 인증 방식과 관련하여 귀사는 안전한 본인확인수단에 대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이용하시면 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이러한 본인확인조치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 등에 따른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를 갈음하는 것은 아니며
 - 해당 법령상 제도 취지에 비추어 신원확인 또는 본인확인조치가 추가로 필요한 경우 해당 법령에 규정된 방식에 따른 조치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15)

질의 요지	전자금융거래기록에 대해 익명처리를 하여 더 이상 특정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된다면, 이와 같이 익명처리된 정보는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는지 여부
회답	<p>□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는 ①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② 신용정보가 아닌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③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p> <p>① 첫째,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신용정보법」의 파기에 관한 조항을 준수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제2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에, - 신용정보의 경우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 따른 익명처리 등 파기 조치를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② 둘째,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에 따른 파기 절차와 방법이 준용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따라서,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익명처리 등을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p>③ 셋째,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법 §22①)을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없고,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정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파기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p>⇒ 따라서, (i) 신용정보나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에 따른 파기절차·방법에 따라 익명조치 등을 하고, (ii) 그 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추적·검색할 수 없도록 하는 등의 조치를 한 경우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의무를 준수하였거나, 파기 대상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p>

이유

-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기록’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법 §22①)을 의미합니다.
 - 이러한 ‘전자금융거래기록’에는 ①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 ② 신용정보에 이르지 않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 ③ 그 밖의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기타 금융거래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우선, 신용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은 「신용정보법」의 파기에 관한 사항에 따라 파기하여야 할 것이며, 이 경우 「신용정보법」에 따른 익명처리(「신용정보법」 제2조제17호) 등 파기 조치(신용정보법 제20조의2 관련) 등을 이행하면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 의무를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전자금융거래법」 제22조제2항은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 의무를 규정하면서, 「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를 제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 요컨대,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대상은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는¹⁾ 개인정보,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²⁾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기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있는 로그기록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 한편,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됩니다(법 §3①).
 -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ii)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 "전자금융업무")하고, iii)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한 채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즉,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금의 유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 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자산보유 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해석 관행이 확인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 해설’, 2017년 참조). 이러한 실무해석 관행이 일반적·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 2009.4.23. 선고, 2006다81035판결 등 참조)
 - 먼저,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2021.9월

시행 예정)」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 등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 시점에 금전,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며, 「보험업법」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 발생에 관하여 금전 및 그 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한편,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루어질 수 밖에 없습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역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법 제2조제10호)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이에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분야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된다고 할 것**입니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7년 참조).

- 따라서, **개인정보에 해당하는 전자금융거래기록의 파기**에 대해서도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금융회사 등이 전자금융거래기록을 파기할 때 그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를 준용하고** 있습니다(법§22③, 시행령§12⑤).

○ 「**개인정보 보호법 제21조제4항**은 “개인정보의 파기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에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도록 하고, 세부사항은 고시에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른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제13조제1항**은 개인정보를 파기할 경우에는 **완전파괴(소각·파쇄 등), 전용 소자장비를 이용하여 삭제, 데이터가 복원**

되지 않도록 초기화 또는 덮어쓰기 수행 중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질의자가 제시하신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파기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와 같은 방법으로 파기하여 결과적으로 시간·비용·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다면, 개인정보는 파기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20.4.22, 행정안전부 개인정보보호정책과 민원회신 관련).
- 따라서, 개인정보인 전자금융거래기록의 경우에도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위와 같이 익명 조치를 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파기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끝으로, 신용정보나 개인정보가 아닌 전자금융거래기록, 무기명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기록, 전자금융거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있는 로그 기록 등의 경우에는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에 해당한다면 파기대상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그런데,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기록'이란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하거나 오류 발생시 이를 확인·정정할 수 있는 기록(법 §22①)을 의미하므로,
- 전자금융거래의 내용을 추적·검색할 수 없고, 오류 발생시에도 이를 확인·정정할 수 없도록 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파기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73)

질의 요지	<p>통상적으로 은행 영업점을 이용하여 스마트뱅킹을 신청할 경우 창구에 비치된 핀패드를 이용하여 고객이 직접 임시비밀번호를 등록하고, 이후 전자적 장치를 통해 고객이 설정한 사용자ID와 임시비밀번호를 입력하는 과정을 거쳐 스마트뱅킹 정식 비밀번호를 지정하도록 함</p> <p>* 해당 스마트 뱅킹 시스템에서는 사용자 ID 및 임시비밀번호 입력시에는 최초 비밀번호등록 화면으로 이동하여 비밀번호의 등록절차까지만 진행될 뿐, 해당 시스템을 통한 고객정보의 조회 등을 위해서는 등록된 최초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별도의 로그인 절차를 거쳐야할 뿐만 아니라, 송금·이체 등을 위해서는 공인인증서·ARS 등 추가인증이 필요</p> <p>만약 이러한 과정에서 영업점 직원이 고객의 사용자ID와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였다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이와 같은 스마트뱅킹 이용 전의 정보처리업무가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 2)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 여부 3)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에서 정한 접근권한을 가지지 않은 자에 의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4) 임시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정식비밀번호를 등록하도록 스마트뱅킹 시스템을 운영한 경우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 제2항, 「전자금융감독규정」 제37조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 및 전자금융거래의 종류·성격·위험수준 등을 고려한 안전한 인증방법에 해당하는 것인지 여부
회답	<p>□ 첫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의 자금의 융통, 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제공 자체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 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으로 해석됩니다.</p> <p>○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도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p>

- 둘째,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므로(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
- 셋째,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기 위한 정보처리시스템도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은행의 영업점 직원 등이 해당 시스템을 통해 임시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1호에서 정하는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에 해당합니다.
 - 앞서 밝힌 바와 같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개념요소로서 전자금융거래에는 금융상품의 제공 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일체의 정보처리업무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또한 자금의 유통, 송금·자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업무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부분도 포함되기 때문입니다.
 - 고객은 은행과 그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법 제2조제7호 참조)을 체결하였고, 그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용자ID와 고객이 영업점에서 직접 등록한 임시비밀번호를 통해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서는 송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초 비밀번호 등록행위를 통해 스마트뱅킹 서비스라는 '금융상품의 제공업무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 끝으로, 귀하께서 질의하신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1호에서 정하는 '데이터의 조작'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해당하는지 및 은행 영업점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스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해당 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유	<p>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의미</p> <p>□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i)전자적 장치를 통하여 ii) 금융상품 및 서비스를 제공(이하"전자금융업무")하고, iii)이용자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의 종사자와 직접 대면하거나 의사소통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를 이용하는 거래를 말합니다(「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1호). 이 경우, 질의하신 해당 스마트뱅킹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의 개념중 i)·iii)의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은 명백하지만 그 시스템에서 ii)의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이 이루어지는지 여부는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합니다.</p> <p>○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적 장치를 통한 '금융상품 및 서비스의 제공', 즉 전자금융업무에 대해서는 별도로 개념을 정하고 있지는 아니합니다. 그런데, '금융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서는 자금의 유통과 관계된 상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국한하지 않고, 금융회사 등이 제공하는 금융 관련상품 및 서비스 일반을 의미한다고 보아 인터넷을 통한 신용정보, 자산보유또는 거래내역 조회 서비스 제공도 전자금융업무에 해당한다고 보는 실무해석 관행이 확인됩니다(금융감독원, '전자금융감독규정해설', 2017년참조). 이러한 실무 해석 관행이 일반적·보편적인 법해석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나아가 법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 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법원2009.4.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등 참조)</p> <p>○ 먼저, "금융상품"에 관한 다른 법령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금융소비자보호법(2021.9월 시행 예정)」에 따른 "금융상품"이란, 「은행법」에 따른 예금 및 대출,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상품등을 의미하고, 「자본시장법」에 따른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목적으로 현재 또는 장래 특정시점에 금전, 그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지급하기로 약정함으로써 취득하는 '계약상의 권리'를 말하며, 「보험업법」도 보험상품을 위험보장을 목적으로 우연한 사건발생에관하여 금전 및 그밖의 급여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고 대가를 수수하는 '계약'으로 정의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금융상품의 통상적 의미에는 계약이라는 개념요소를 포함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p> <p>○ 한편, 금융상품의 계약적 요소 등으로 인해 대부분의 전자금융업무 처리 과정에는 그 계약당사자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특히, 금융회사 등과 이용자 간에 비대면,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거래의 특성 상, 계약당사자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인하는 절차도 전자적으로 이</p>
----	---

루어 질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전자금융거래에 있어서 거래지시를 하거나 이용자 및 거래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용되는 수단 또는 정보로서 "접근매체"에 대해 별도의 규율을 두고 있는 점(법 제2조제10호)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이와 같이, 전자금융업무에는 계약당사자의 확정 등을 위한 개인정보, 거래내역 등에 관한 신용정보, 거래지시 등에 관한 전자금융거래기록 등 다양한 정보 처리가 필수적으로 수반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스마트뱅킹 이용 전 정보처리업무 역시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이에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거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 '전자금융거래'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과 「전자금융거래법」의 관계

□ 그런데, "전자금융거래"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여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 확보(법 제1조)하는 것을 입법목적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법」의 취지상, 전자금융업무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그 시스템에서 보유·처리되는 정보의 기밀성·무결성·가용성을 보장하고 그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금융보안(Cyber security: 유럽연합 일반정보보호법 제32조 등 참조)에 관한 체계가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를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전자금융거래가 안전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할 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함과 동시에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인력, 시설, 전자적 장치, 정보기술부문, 전자금융업무 등에 관하여 금융위원회에서 정하는 기준(「전자금융 감독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안전성 확보의무를 금융회사 등에 부과하고 있으며(법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전자금융업무 및 그 기반이 되는 정보기술부문 보안을 총괄하여 책임질 정보보호최고책임자를 지정(법 제22조)하도록 하는 등 금융보안에 대해 체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전자금융거래법」의 입법취지와 목적,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같은 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란 금융회사 등의 자금의 융통, 송금·자금이체 등 지급거래, 그 밖에 전자적 장치를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상품'의 제공 자체에 한정되는 개념이라기 보다는, 금융상품의 제공 과정에서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개인정보·신용정보·전자금융거래기록 등을 비롯한 일체의 '정보 처리'를 포함하는 법개념으로 해석됩니다.

- 참고로, 「전자금융거래법」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금융거래에 적용되므로(법 제3조제1항), 금융회사등의 전자금융업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호에 대해서도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에 우선하여 금융 분야의 사이버보안에 관한 특별법으로서 「전자금융거래법」이 우선 적용됩니다(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금융분야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2017년 참조). 예를 들어, 「전자금융거래법」은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한 다수의 특칙 규정(제21의4 제1호, 제26조 등)을 두고 있는바, 일정한 사실관계 하에서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특칙 규정의 적용·포섭이 문제되는 경우에는 일반법인 「개인정보보호법」의 해당 규정(제59조제3호, 제18조제1항 등)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이는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 및 그 임직원이 전자금융업무의 처리 과정에서 수시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비롯한 다양한 정보를 처리한다는 현실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금융회사등과 고객 간에 비대면의 자동화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금융업무의 특성상, 개인정보 처리 업무에도 고도의 자율성·독립성을 부여받고 있는 금융회사등으로 하여금 그 정보 처리의 안전성·신뢰성을 사전에 확보토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전자금융거래법」은 금융회사등에 강력한 접근권한 통제, 직무분리 등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장치를 마련하도록 하고(법 제21조제2항), 이러한 안전성 확보 의무를 위반한 금융회사등에 대해서는 그 임직원에게 대한 신분제재 및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등(법 제39조제6항, 제51조제1항제1호) 「개인정보보호법」과 별도로 금융보안에 관한 특별한 규율체계를 채택하고 있는 점 등에서도 확인됩니다.

3.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우선, "전자금융기반시설"이란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말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제2조제21호)
- 이 경우, 해당 스마트뱅킹 시스템 중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절차를 구현하는 부분도 '정보처리시스템'에 해당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해당 시스템 부분까지만 접근하는 것으로는 송금·이체 등을 할 수 없으므로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정보처리시스템, 즉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한 것으로 평가할 수는 없지 않은가 라는 의문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문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거래"의 의미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자금융기반시설의 개념요소로서 전자금융거래에는 금융상품의 제공뿐만 아니라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제공되는 서비스로서 일체의 정보 처리 업무가 포함되므로, 전자금융기반시설 또한 자금의 유통, 송금·자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에 관한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그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 부분도 포함된다고 해석됩니다.

○ 질의하신 사실관계만으로 판단한다면, 고객은 은행과 그 영업점에서 스마트뱅킹 서비스를 이용하기로 하는 전자금융거래계약(법 제2조제7호 참조)을 체결하였고, 그 전자금융거래계약에 따라 은행으로부터 부여받은 이용자ID와 고객이 영업점에서 직접 등록한 임시 비밀번호를 통해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시스템에 고객의 이용자ID와 임시비밀번호를 알게 된 은행의 영업점 직원이 이를 이용 하여 최초 비밀번호를 등록하는 행위를 하였다면, 비록 그 정보처리시스템 부분에서는 송금·이체 등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최초 비밀번호의 등록 행위를 통해 스마트뱅킹 서비스라는 '금융상품의 제공 업무에 수반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정보를 처리하는 시스템'으로서 "전자금융기반시설에 접근"하는 행위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4. 「전자금융거래법」상 안전성 확보의무 위반 등 관련

□ 다만, 질의하신 행위가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의4제1호에서 정하는 '데이터의 조작' 등에 의한 전자적 침해사고 등에 해당하는지 및 은행의 영업점 직원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시스템적인 통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해당 은행 및 관련 임직원들이 같은 법 제21조제2항 등에 따른 안전성 확보 의무 등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87)

질의 요지	<p>전자금융업 등록 요건상 재무건전성 판단기준인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부채비율을 산정함에 있어,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은 본항에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규정한 “일시보관금” 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합니다. 만약 이를 차감할 수 없다고 해석한다면 소액해외송금업을 영위하는 회사가 전자금융업에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 부채비율 왜곡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재무건전성 요건 충족에 큰 어려움이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현행법상으로는 소액해외송금업자의 일시보관금이 본항에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아, 큰 혼란을 주고 있습니다.</p> <p>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라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일시보관금” 에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도 포함할 수 있는지 유권해석 요청드립니다.</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p><input type="checkbox"/> 귀사는 전자금융업 등록 시 충족하여야 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 따른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의 한도를 산정할 시 부채총액에서 차감할 수 있다고 열거한 업무에 따른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 도 포함될 수 있는지 질의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거래법」 제28조에 따라 전자금융업 등록을 하려는 자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재무건전성 기준을 충족하여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에 따라,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1항 및 제2항은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일정 한도로 정하고 있으며,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이용자와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이하 “미정산 잔액”)은 부채총액에서 차감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관계에서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일시적으로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송금·결제되기 위한 대기자금의 의미로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이라면,
- 명시적으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업무 관련하여 소액 해외송금업무를 예시하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 같은 조 같은 항에서 ‘전자자금이체·전자지급결제대행·결제대금예치·전자고지결제·통신과금서비스 등의 업무를 영위하는 자’로 규정하여 **미정산 잔액 차감 대상의 확대 가능성을 염두에 둔 예시적 규정**이라는 점,
외국환거래법령상 소액해외송금업 등록 시 부채총액에서 일시보관금을 차감하여 자기자본 대비 부채비율 한도를 산정하고 있는 점,
전자금융감독규정상 “미정산 잔액”과 동일한 성격의 송금·결제를 위해 일시적으로 보관하는 금액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 소액해외송금업자가 소액해외송금 업무를 영위하면서 고객과의 거래 관계에서 **일시 보관하는 금액**은 「전자금융감독규정」 제51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미정산 잔액”으로 볼 수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부채총액에서 차감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337)

질의 요지	<p>□ 전자금융업무를 수행하는 금융회사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와 관련하여 클라우드 시스템을 사용하려고 하는 경우도 전자금융감독규정(특히, 그 중에서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에 관한 제14조의2 규정)이 적용되는지? 만약 적용되지 않는다면 클라우드 시스템의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성(즉, 전자금융감독규정 적용여부)을 판단하는 구체적인 기준은 무엇인지?</p>
회답	<p>□ 금융회사 등은 전자금융거래와 관련이 없는 업무라 할지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이유	<p>□ 지난 '18.7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을 통해 금융분야 클라우드 이용을 확대한 바, 금융권의 인공지능(AI)·클라우드 등 디지털 신기술을 활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p> <p>○ 하지만 금융회사의 클라우드 활용 증가로 제3자 리스크(Operational Risk of Third Party) 또한 증대되고 있으며, 클라우드 사업자의 장애가 금융회사뿐만 아니라 전체 금융 인프라에 대한 집중 리스크(Cloud Provider Concentration Risk)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p> <p>□ 금융회사 등이 클라우드 관련 리스크를 관리할 수 있도록 클라우드 이용가이드에서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18.7월 「전자금융감독규정」 개정시 금융회사와 전자금융업자가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를 통해 이용하려는 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준수하여야 할 절차를 마련하였습니다.</p> <p>○ 이 때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의 이용대상이 되는 정보처리시스템은 전자금융업무를 포함하여 정보기술부문에 사용되는 하드웨어(hardware)와 소프트웨어(software)를 말하며 관련 장비를 포함합니다.(「전자금융감독규정」 §2)</p> <p>□ 또한, 현행 「전자금융거래법」 제21조제2항에서는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전자금융업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IT)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p> <p>* 금융회사등은 전자금융거래의 안전성과 신뢰성을무 뿐만 아니라 일반 정보기술(IT)부분 업무에 대해서도 일정한 기준을 준수하 확보할 수 있도록 전자적 전송이나 처리를 위한 건물, 설비, 전산실 등 시설 부문과 단말기, 전산자료, 정보처리시스템 및 정보통신망 등 정보기술부문 등의 기준을 마련(전자금융거래법§21②, 전자금융감독규정§7)</p> <p>○ 귀 사께서 전자금융거래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업무라도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등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업무를 처리하고자 하는 경우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른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 참고사항으로 첨부하신 비조치의견서('19.12.23. 회신)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HR정보를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로 위탁시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를 준수하되, 제14조의2 제3항의 고유식별정보 또는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아, 동조 제3항 및 제8항은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38)

질의 요지	<p>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2019. 1. 1.시행) 시행일 이전에 개정전 전자금융감독규정(2016. 10. 5.시행) 제14조의2에 따라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비중요 정보처리시스템 지정, 사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 의결, 보고서 금감원 제출 등)를 거쳐 사용중인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하여, 해당 서비스 이용계약이 2019. 1. 1.이후에 갱신(재계약)되는 경우 (한편, 대상 클라우드 시스템은 동일함),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 2에 따른 개정된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즉, 신설된 서비스 제공자의 건전성 및 안전성 등 평가,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 준수등)를 새로이 거쳐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전자금융감독규정」을 '18.12월 개정하여, 금융회사 및 전자금융업자가 개인신용정보·고유식별정보를 금융의 특수성을 반영한 기준을 충족한 국내소재 클라우드를 통해 처리할 수 있도록 이용 데이터의 범위를 확대하였고, 클라우드 활용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클라우드의 내부통제 강화 및 보고의무 등 관리·감독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에 따라,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19.1.1. 시행) 시행일 이전에 귀사가 개정 전 「전자금융감독규정」(‘16.10.5. 시행)의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절차를 준수하여 이용 중이라 하더라도, 귀사가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계속 이용하기 위해 ‘19.1.1. 이후에 해당사와 재계약을 하는 것이라면,</p> <p style="margin-left: 20px;"><input type="checkbox"/> 현행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귀사는 자체적으로 수립한 기준에 따른 이용대상 정보처리시스템의 중요도 평가 등을 수행하여야 하며, 평가결과 및 자체 업무 위수탁 운영기준에 대해 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는 등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또한, 「전자금융감독규정」 부칙 제2조는 시행일(‘19.1.1.) 이후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현행 규정 제14조의2를 따르도록 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시행일 당시 유지되고 있는 클라우드컴퓨팅 서비스 이용계약은 현행 규정 제14조의2에 따라 적용되지 아니하나, 시행일 이후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는 적용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62)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캐피탈사의 한도대출을 이용한 선불지급수단 운영*이 가능한지 여부</p> <p>* 캐피탈사에서 한도대출을 신청한 고객이 생활자금 등 용도로 대출금 사용 시, 대출금을 출금하여 은행 계좌에 입금 후 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불편을 해소하고자 한도여신의 출금매체인 론카드(가칭)에 선불전자지급수단 기능을 결합하여 한도대출금으로 직접 충전하여 신용카드 등 가맹점에서 이용할 수 있는 상품을 개발하고자 검토 중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은 가상계좌를 통한 계좌이체, ATM을 통한 입금 또는 캐피탈의 한도여신에서 출금 등의 방식으로 활용할 예정</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 가능한지에 대하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 타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유	<p><input type="checkbox"/> 귀사께서 질의하신 내용만으로 명확하지 않으나, 한도대출금이 고객의 계좌를 거치지 않고 직접 선불전자지급수단으로 충전되어, 가맹점에서 재화와 용역의 구입이 이용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가능한지 질의한 것으로 이해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선불전자지급수단”이란 이전 가능한 금전적 가치가 전자적 방법으로 저장되어 발행된 증표 또는 그 증표에 관한 정보로서 「전자금융거래법」제2조제14호의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을 말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의 충전 수단 및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선불전자지급수단과 유사한 성격의 전자화폐의 발행이 현금 또는 예금과 동일한 가치로 교환하도록 하는 같은 법 제15조의 취지(거래의 안전성·신뢰성 확보)와 선불전자지급수단 이용자의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타 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사항이 없다면, 원칙적으로 선불전자지급수단을 충전할 수 있는 수단은 현금 또는 예금으로 보아야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신용정보

법령해석 회신문(190372)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법원의 면책결정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인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법원으로부터 어떤 법령에 대한 면책결정인지 명확하지 않으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인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20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면책은 해당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된다는 것을 의미할 뿐 채무 그 자체를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종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03)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보험회사가 계약 인수, 심사 단계에서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 계약체결의 중요사항에 대한 고지사항이 누락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보험계약자에게 해당 내용을 확인하기 위하여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위수탁과 관련된 처리에 관하여는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2호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계약의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로서 신용정보의 처리를 위탁하기 위하여 수탁자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개인인 정보주체로부터 제32조 제1항에 따른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input type="checkbox"/> 다만, 귀사가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에 제공하려는 고객의 질병 및 상병 등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법 제2조 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신용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input type="checkbox"/> 따라서, 귀사가 보험설계사 및 보험대리점과의 위탁계약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하여서 「개인정보보호법」의 위탁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05)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당행이 거래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의 개별 동의 없이 기업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이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6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허용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귀사의 거래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 어려워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32조는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신용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는 조항입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제32조 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주체로부터 제공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 한편, 기업신용정보의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32조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p><input type="checkbox"/> 질의하신 내용으로만 판단할 때, 귀사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라 개인사업자의 대표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사업자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조회가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는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기업의 대표자에 대한 개인신용정보가 필요한 경우, 그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p><input type="checkbox"/> 귀사는 개인사업자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 개인사업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업신용정보를 제공 받는 것이 가능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귀사의 거래 유치 목적은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8조 제10항 제4호에 따른 해당 기업과의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의 설정 및 유지 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에 해당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p><input type="checkbox"/> 따라서, 귀사는 거래 유치 목적으로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동의 없이 신용정보집중기관 및 신용조회회사로부터 개인사업자 대표자의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47)

질의 요지	<p>1. 동시에 처리되는 여러 건의 대출신청에 대해 정보주체로부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p> <p>2.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고객이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 기존 대출심사를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은 것을 근거로 추가 대출 신청 건에 대한 처리를 위해 정보주체로부터 추가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p>
회답	<p>① 여러 건의 대출이 동시에 처리된다 하더라도 대출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등이 다른 경우, 대출 건별로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서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②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조회) 받으려는 자는 제공받을 때마다 개별적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6항에 따라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으려는 자는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것에 대한 동의의 효력기간을 개인에게 알리고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귀사는 고객의 대출신청 요청에 따라 대출심사, 대출실행 시 고객으로부터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아 신용조회회사 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으로부터 고객의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p>① 고객이 여러 건의 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한 대출마다 개인신용정보의 조회 목적, 조회하는 개인신용정보의 항목 등이 다른 경우, 대출 건별로 고객으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다만, 각각의 대출 신청 건에 대하여 개인신용정보 조회 동의를 받은 경우, 각 대출 신청 건에 대해 기존에 동의한 목적 또는 이용 범위 내에서 개인신용정보의 정확성·최신성을 유지하기 위해 개인신용정보를 조회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별도로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p> <p>② 마찬가지로, 대출심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추가로 대출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신용정보조회 동의가 필요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053)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에 적용되는지 여부</p> <p><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최초 동의일로부터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 발송 후 고객이 수신동의 철회 의사표시가 없는 경우, 마케팅 동의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전화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른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되므로 전화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전송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이 적용됩니다.</p> <p>○ 해당 행위가 현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에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개인신용정보 마케팅 동의 고객을 대상으로 2년 주기로 동의사실 및 철회방법 안내문을 발송하도록 하는 사항은 「정보통신망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전화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 및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4조의3 제1호에 따라 전자적 매체나 방식에 해당하므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가 적용됩니다.</p> <p>○ 현행 「신용정보법」은 제20조의2 제2항에서 신용정보제공·이용자는 금융거래 등 상거래관계가 종료된 날부터 최장 5년 이내(해당 기간 이전에 정보 수집·제공 등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그 목적이 달성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삭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 동의의 유효기간, 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대해서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p>○ 따라서, 현행 「신용정보법」 제40조 제7호가 적용되는 사항에 대해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는지 여부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p><input type="checkbox"/> 한편,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전송을 위해 고객에게 전화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2020. 8. 5. 시행예정인 개정 「신용정보법」 제40조 제2항에 해당되므로, 「정보통신망법」 제50조가 준용됩니다.</p>

- 다만, 「정보통신망법」 시행령 제62조의3(수신동의 여부의 확인)에 따라 전자적 매체를 통해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을 위해 수신자의 사전 동의를 받은 자는 수신동의를 받은 날부터 2년마다 해당 수신자의 수신동의 여부를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058)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가 비대면 실명확인 시, 강화된 신분증 진위확인을 위해 신분증 이미지 내 특징정보를 추출하여 금융회사 보유 DB와 비교·검증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는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 제4호에 따라 별도 동의 없이 정보처리가 가능한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신분증에 있는 사진 정보의 특징을 추출한 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개인정보의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라 성명, 연락처, 개인식별번호 등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는 경우에만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p> <p>○ 질의하신 바에 따르면, 귀사가 처리하려는 신분증에 있는 사진 정보의 특징을 추출한 정보는 특정 신용정보주체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는 해당하지만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와 결합되지 않아 개인정보에 해당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15조 제2항은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조항입니다.</p> <p>○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등 처리와 관련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행정안전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198)

질의 요지	<input type="checkbox"/>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 중에서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업으로 영위하는 대부업자도 「신용정보법」상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지 여부
회답	<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영위하는 것과 관련 없이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하여야 하고, <input type="checkbox"/>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처리하는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유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제1항에 따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3조제2항에 따른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이하, '대부업자') 등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7조제3항은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있는 대부업자 중에서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하는 대부업자의 경우, 해당 기관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에 따라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을 지정하고, 개인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 실태를 점검해야하는 대부업자는 대부업 이외에 다른 영업을 주된 영업으로 하고 있더라도 직전연도 말 기준으로 총 자산이 100억 원을 초과한다면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03)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금융회사(당사)가 보유하고 있는 고객 업무 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 정보(전산이력)가</p> <p>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항에 따라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 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인지?</p> <p>② 내부 업무 처리에 관한 자료로 고객이 열람할 수 없는 정보(신용정보업감독 규정 제20조 근거)인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35조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경우, 신용정보주체가 이용 및 제공한 내역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 경우, 개인의 신용정보를 이용한 경우에는 이용 주체, 이용 목적, 이용 날짜, 이용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고, ○ 개인의 신용정보를 제공한 경우에는 제공 주체, 제공받은 자, 제공 목적, 제공한 날짜, 제공한 신용정보의 내용 등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p><input type="checkbox"/>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 경영관리의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반복적인 업무위탁을 위하여 제공하는 등의 경우에는 신용정보 주체의 열람 청구가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만으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어려우나, 질의주신 내용을 근거로 판단할 때, 고객 업무처리 시 발생한 개인 신용정보 조회이력정보는 신용정보 주체가 열람청구 가능한 본인정보에 해당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258)

질의 요지	<p>□ 보험회사 등이 수집·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는 “개인의 질병·상해 또는 그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이하 ‘질병정보등’)”에 대해, 이를 “가명” 처리하는 경우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조사 또는 제3자 제공이 가능한지</p>
회답	<p>□ 보험회사를 포함한 신용정보회사등은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을 위해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을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없이 수집·조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 가능합니다.</p> <p>○ 다만, 이 경우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정법’) 제40조의2 등 가명정보와 관련한 법령 등을 준수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p>
이유	<p>□ 신정법 제32조제6항제9호의2는 가명처리된 개인신용정보는 통계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인 경우 정보주체 동의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p> <p>○ 제15조제2항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제1항제2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신용정보를 수집·조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신정법 제33조제2항은 신용정보회사등이 질병정보등을 수집·조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려면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이는,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개인신용정보에 비해 민감성이 높아 개인정보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점 등을 감안하여 개인신용정보에 대한 수집·조사 또는 제공 동의를 받는 경우 질병정보등 수집·조사 또는 제공에 대해 별도로 고지하고 동의를 받도록 하는 등 동의의 방법 측면에서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 의무를 보다 강화한 취지로 보입니다.</p> <p>□ 그러나,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정보 자체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고, 민감성도 극히 낮아 개인정보 침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지 않은 정보로서 정보 자체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있고, 민감성도 높은 통상적인 질병정보등과 동일한 성질의 정보라 보기 어려운 것으로 보입니다.</p> <p>○ 또한,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은 추가정보 없이는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어 제33조제2항에서 말하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기 위하여 추가정보를 이용하여 재식별화 하는 것이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추가정보를 이용한 재식별은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신용정보법 제40조의2제6항 및 제7항)로서 이는 신용정보법이 전혀 예정하고 있지 않습니다.)</p>

- 따라서,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 일반적인 질병정보등을 상정하여 규정된 제33조제2항을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신정법 제32조 및 제15조에 따른 **가명정보 예외 규정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 한편, 신정법 제32조 및 제15조의 정보주체 동의 예외 규정은 정보처리 위탁, 법원의 제출 명령, 과세자료 제공, 가명정보 제공 등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 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으며, 정보주체로부터 동의를 받는 것은 어려운 경우가 있음을 감안하여 도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 가명처리된 질병정보등의 경우에도 정보제공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개인정보침해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낮지만, 동의를 받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제32조 및 제15조에 따른 예외 규정 마련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62)

질의 요지	<p>①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등기우편, 보통우편 등)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이하, 전자문서법)에 따른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해 전자문서로 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 (이를 위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지)</p> <p>②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을 위하여 임의로 발송하는 우편물을 알림톡 등 연계정보(CI : Connecting Information)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으로 전자고지하는 것이 가능한지</p>
회답	<p>□ 은행 등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른 기관은 ①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②고객이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하였으며, ③주민등록번호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으로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p> <p>○ 고객과의 금융거래계약에 따라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는 것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p> <p>□ 법적·계약적 근거 없이 고객에게 발송하는 우편물을 전자고지로 대체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신용정보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가 없습니다.</p>
이유	<p>□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37조의2제4항에 따라 금융회사 등은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개인식별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정보로서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됨</p> <p>○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을 위해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하는 업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 다만,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모든 방식(우편물 등)이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불가피하게 필요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 따라서, ①금융회사 등이 고객과 체결한 금융거래의 이행과 관련하여 고객에게 고지·통지 등의 안내 의무가 있고, ②고객이 고지·통지 등의 안내를 위한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받는 것에 동의한 경우,

○ ③금융회사 등이 고객에게 발생하는 우편물을 공인전자문서중계 서비스를 통한 전자문서로 대체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이외의 다른 방식이 없다면, 이는 금융거래를 위해 신용정보를 이용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한 불가피한 경우로서 주민등록번호의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법령해석 회신문(200283)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손해보험계약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만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개인정보(당사 및 외부의 기관/회사에서 개인 신용을 판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가 「신용정보법」에 따른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귀사가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하여 수집 등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라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는 신용정보에 해당합니다.</p> <p>○ 「보험업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보험상품의 종류, 기간, 보험료 등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는 신용정보주체의 거래내용을 판단할 수 있는 정보로서 신용정보에 해당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질의주신 내용으로만 판단하였을 때, 귀사가 손해보험계약 체결 및 보험금의 청구·지급을 위해 수집하고 처리하는 정보는 보험계약에 관한 정보 및 보험금의 청구 및 지급에 관한 정보로서 개인신용정보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294)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자의 경우에도 '20.8.5. 시행된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 6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신용조사업무 또는 채권추심업무만을 영위하는 회사는 '20.8.5.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에 따른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가 불필요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개정 신용정보법 부칙 제6조는 동 법 시행 전 신용정보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로 하여금 법 제6조제4항의 유지요건을 갖추어 이 법 공포 후 4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2개월 내에 금융위원회에 신용정보업 허가 특례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p> <p style="margin-left: 20px;">○ 금융위원회로부터 신고 수리 통보를 받은 회사는 신고 수리된 범위 내에서 신용정보업 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도록 하고 있습니다.</p> <p><input type="checkbox"/> 동 부칙 제6조의 취지는 법 개정으로 인해 신용정보업 허가단위가 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 등으로 세분화됨에 따라 기존 신용정보회사들의 업무범위에 대한 혼란이 발생할 수 있어, 기존에 허가받은 신용정보회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반면, 신용조사업 및 채권추심업의 경우 법 개정에 따른 허가단위 및 허가대상 업무에 변화가 없음을 고려할 때 별도의 신고가 필요하지 않으며, 별도의 신고없이도 기존의 허가받은 범위 내에서 계속적으로 신용조사업무 및 채권추심업무를 영위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26)

질의 요지	<p><input type="checkbox"/> 정보주체가 대부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이하, '마이데이터 사업자')에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대부업체가 정보주체의 전송요구에 따라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에게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하기 위해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는지 여부</p>
회답	<p><input type="checkbox"/>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모든 대부업체는 개인인 신용정보주체가 자신의 신용정보를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대부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직접 또는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이유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33조의2제1항에 따라 개인인 신용정보주체는 같은 법 제22조의9제3항에 따른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 대하여 그가 보유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개인신용정보를 해당 신용정보주체 본인, 마이데이터 사업자 등에게 전송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신용정보제공·이용자등에는 「신용정보법」 시행령 제18조의6제4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이 포함됩니다.</p> <p><input type="checkbox"/> 「신용정보법」 제22조의9제5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등은 신용정보주체가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자신의 신용정보를 전송하도록 요구하는 경우, 중계기관을 통해 전송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p> <p style="margin-left: 20px;">○ 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된 대부업자는 신용정보주체의 개인신용정보를 전송할 수 있도록 API를 구축하거나 중계기관을 이용하기 위한 전산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p>

법령해석 회신문(200342)

질의요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 및 판매하고,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령해석 요청의 원인이 되는 사실관계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전자금융업자인 A사는 보유 중인 개인신용평가모형을 B은행에 판매함과 동시에, 개인신용정보 제공에 대한 해당 개인의 사전 동의를 얻어 B은행에 A사가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제공 ② 다만, B은행은 A사가 제공한 정보 외에 다른 신용정보업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를 종합하여 고객에 대한 신용평가를 수행하며, ③ A사는 B은행의 개인신용평가 결과 산출에 개입하거나, 평가 결과를 제공받지 않고, 자체적으로 평가한 개인신용평가결과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음
회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평가모형을 개발·판매하는 행위 및 고객의 사전동의를 받아 고객의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평가업이란 개인의 신용을 판단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의 신용상태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영업으로 하는 것(「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으로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신용평가 및 신용평가결과의 제공이 없는 단순 신용평가모형의 판매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또한, 신용정보제공·이용자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정보주체로부터 사전 동의를 얻어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행위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를 요하는 업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만, B은행이 A사가 제공한 신용평가모형 및 신용정보만을 활용하여 개인 신용평가를 수행하는 등 회사가 사실상 은행에 개인신용평가결과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신용평가업 허가가 필요하며, ○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제공대상 기업(B은행)과 제공대상 정보, 제공되는 정보가 해당 기업(B은행)의 개인신용평가에 활용된다는 사실 등을 충분히 고지하여 정보주체가 동의내용을 알고 동의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7

기 타

(코로나19 대응관련 발송 공문 등
“금융규제민원포털” 미등재)

법령해석 회신문

질의요지	<p>□ 내부등급법 적용 국내은행(은행지주회사 포함, 이하 동일) 등이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금융지원 협약('20.3.23.)'에 따라 증시안정펀드(하위펀드 포함, 이하 동일)에 출자하고 동 펀드의 자산으로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p> <p>◦ 자기자본비율(BIS비율) 산출시 증시안정펀드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 방법</p>
회답	<p>□ 증시안정펀드가 주식시장 안정을 목적으로 조성되어 한국거래소 상장주식에 투자되며, 정부가 세제지원 등을 통해 동 펀드에 출자하는 은행의 투자 금액을 보조하는 경우</p> <p>◦ 동 펀드의 신용위험가중자산은 해당 펀드의 기초자산(상장주식)에 대해 표준방법을 적용하여 산출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p>
이유	<p>□ 증시안정펀드는 최근 전세계적으로 확산된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 경제를 안정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조성되어, 정부가 투자금액에 대해 세제지원 등을 통해 보조하고, 정부 감독하에 운영될 예정임을 감안하여</p> <p>◦ 내부등급법 적용은행도 동 펀드가 보유한 기초자산(상장주식)에 대한 신용위험가중자산 산출시 표준방법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관련 근거 규정 :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3> 제134조 바.(2))</p>

< 예대율 5%p 이내 한시적 적용유예 >

(금융위 → 금감원, 202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은행연합회 및 은행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 금융위원회는 '20.4.16일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6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고 결정 하였으며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고 결정 하였음

2. 예대율 한시적 적용 유예

- 금융위·금감원은 '21.6월 30일까지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21.6월 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5%p 이내의 예대율 위반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한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3.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정부는 지난 '20.3.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자산 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예된 대출 차주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리금이 갚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권 재조정여신¹⁾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은행은 금번 대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²⁾할 수 있으며, 총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의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 기존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4. 한시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금융위·금감독은 LCR, 예대율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에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
 -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 별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보험사 RP 매도를 통해 채안·증안펀드 출자자금 조달 허용> (대외송부, 2020.04.20.)

제목 보험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관련 질의 회신

1. 손해보험협회 손보협경 980-22호 (2020.4.20.) 관련입니다.
2. 보험회사의 환매조건부채권(RP) 매도 관련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일반적으로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또는 자금관리상 편의를 위한 차입은 적정 유동성을 유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 일반적인 펀드출자·자산매입을 위한 차입은 유동성 목적 보다는 자산운용 수익을 제고를 위한 레버리지 목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한 측면
- 다만, 채안증안펀드는 보험회사가 금융시장 안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출자를 약정하여 일시적으로 운영되는 펀드로, 자산운용 목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동 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이 유동성을 제공하는 등 출자 금융 기관에 대한 유동성 지원 필요성이 정책적으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험회사가 긴급하게 채안·증안펀드에 출자해 평상시 유동성 수준 유지를 위하여 RP매도가 필요한 경우라면 보험업법 시행령 제58조제2항의 '적정한 유동성 유지 목적'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원화에대출 5%p 한시적 적용유예> 및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대외송부, 2020.05.04.)**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4.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붙임 1> 참조). 이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안내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한시적 완화 (외은지점 제외)

□ 금융위원회는 '20.4.16일 은행업감독규정 제26조제1항제2호 단서 및 제63조의2제3항 단서에 따라

-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85 이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으며
- 외화 유동성커버리지비율을 "2020년 9월 30일까지 100분의 70 이상으로 한다"라고 결정하였음

2. 원화에대출 한시적 적용 유예

□ 금융위·금감원은 '21.6.30일까지 5%p 이내의 원화에대출 위반에 대해서는 제재 등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임 (<붙임 2> 원화에대출 비조치 의견서 참조)

- 이와 관련하여 금융위는 '21.6.30일까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나타난 5%p 이내의 예대출 위반은 은행업감독규정 제41조제3항에서 규정한 "경영의 건전성을 크게 해치거나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함

3. 만기연장 대출 건전성 분류 유지

□ 정부는 지난 '20.3.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에 대한 금융위·금감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금번 원리금 상환유예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예된 대출 차주의 채무변제 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리금이 감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권재조정여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은행업감독규정 [별표3] 3. 채권재조정여신의 건전성 분류
- 은행은 금번 대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 (예) 기존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4.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에 대한 면책 관련

-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경영공시·업무보고서 제출 기한을 지키지 못할 우려가 있는 경우 금감원에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기한으로부터 1개월 이내 공시·보고서 면책

- ①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의 영향으로 해당 금융회사 본사 또는 대체사무공간(사업장)이 폐쇄되어 기한내 해당 사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② 해당사무 담당 직원(대체직원 포함) 코로나19 확진, 쉰 임직원의 격리조치 등으로 기한 내 해당사무의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③ 외국 본점의 코로나19 대응 방침에 따라 사무공간(사무실)이 폐쇄되거나, 순환재택근무 실시·원격근무 시스템 미비 등으로 인해 기한내 해당 사무 이행이 불가능한 경우
- ④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조치 등을 위한 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외부감사검토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경영공시면)
- ⑤ 기타 ①~④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

5. 한시적 조치에 대한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

- 금융위·금감원은 LCR, 원화에대응 등 기한부 조치들에 대해서는 기한 도래 전에 연장·보완 필요성을 재검토하고
 - 정상화 과정에서 필요시 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 등을 포함,
 - 이해관계자들에게 충분히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을 부여하기로 하였음.

<붙임 1>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1부.

<붙임 2> 원화에대응 비조치 의견서 1부. 끝.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 (보험업권, 20.05.04)

제목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안내

1.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17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2. 위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및 보험회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정부는 지난 '20.3.19일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한 바 있으며, 이에 따른 대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장은 아래와 같음.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 금번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금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예된 대출 차주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리금이 감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금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권 재조정대출*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보험업감독규정 [별표13] 3. 채권재조정대출의 건전성 분류
- 보험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총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 (예) 기존 정상 분류어식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붙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1부. 끝.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 (상호저축은행업권, 20.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저축은행중앙회 및 저축은행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는 지난 '20.3.19.(목) 및 '20.4.8.(수)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인식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등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개인채무자**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금번 원금 상환유예 등은 개별채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으며, 동 지원으로 원리금이 감면되거나 해당 채권의 현저한 가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 4.1. 발표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 4.28. 보도자료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지원대상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조치에 따른 원금 상환유예 등이 저축은행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하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 저축은행감독규정 별표7

□ 금융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 등이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총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 (예) 기존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 (여신전문금융업권, 20.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공동으로 4.20일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동 방안 중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여신금융협회 및 여신전문금융회사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정부는 지난 '20.3.19.(목) 및 '20.4.8.(수)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및 개인채무자에 대한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따른 대출채권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인식에 대한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원금 상환유예 등 대출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총당금 인식 원칙

-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해 중소기업, 개인사업자* 및 개인채무자**에 대해 사전적으로 이루어지는 금번 원금 상환유예 등은 개별채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으며, 동 지원으로 원리금이 갺면되거나 해당 채권의 현저한 가치 변화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4.1. 발표한 「원금상환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 가이드라인」에 따른 지원대상

** 4.28. 보도자료 「4월 29일부터 코로나19 피해 취약 개인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에 따른 지원대상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는 금번 조치에 따른 원금 상환유예 등이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등 관련 규정에 따른 자산건전성 분류 하향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별표1

- 금융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금 상환유예 등이 이루어지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총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예) 기존 정상 분류여신은 계속 정상으로 분류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상호금융업권, 20.04.29)

제목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 관련 안내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정부는 지난 '20.3.19.(목) 비상경제회의에서 코로나 19로 인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의 만기 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를 발표하였습니다.
3. 이에 동 대책이 적용되는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의 법령해석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해당 상호금융 조합에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기연장·상환유예 대출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 및 충당금 인식 원칙

- 이번 원리금 상환유예 대책은 모든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 적용되고 개별차주의 상환능력 저하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에 따라 상환유예된 대출 차주의 채무변제능력이 저하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원리금이 갺면되거나 채권의 현저한 가치변화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 그러므로,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은 이번 조치에 따른 원리금 상환유예는 채무재조정 여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 금융회사는 금번 대책에 따라 원리금 상환이 유예되는 대출에 대해 기존 자산건전성 분류를 유지할 수 있으며, 충당금 추정 및 이자상환 유예기간에 대한 이자수익 인식 시에도 상기 관점을 반영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별첨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4.17)」

붙임 1. (별첨) 금융규제 유연화 방안.